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대토론회

2011년 8월 23일 (화) 15:00~17:0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 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희망센터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대토론회

인 쇄 : 2011년 8월

발 행 : 2011년 8월

발 행 인 : 구 분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101 / F. (02)2250-3007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사회복지법인 나누리 (02)2269-8412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인사말 / 백희영 / 여성가족부 장관

구본용 / 한국청소년상담원장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 실태와 원인 1

한태룡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학생운동선수의 권리보호 정책 발전방안 17

김두현 /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실효적 지원 대책 제안 39

이병호 / 잠신고등학교 교사

학생운동선수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 44

이소현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제안 48

장윤창 /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병커 멘탈리티와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54

전성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학교체육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58

김혜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 방안 관련 토론 61

정상익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교육연구사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 및 정책인지 관련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75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입니다.

먼저, 학생운동선수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대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적극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청소년 희망센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 내 운동선수의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4%가 구타 등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는 등 학생운동선수의 권리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09년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학생 선수 진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운동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직업적 안정을 이루는 경우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운동 중단에 대비한 학습권 보장, 진로 지도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 **백 희 영**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로 학교생활과 운동생활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체벌 등 각종 폭력 문제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야기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발표해 왔으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운동선수의 권리보호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학생운동선수의 권리보호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토론회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과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협의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원장 구본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해 주신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희망센터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로부터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위탁받아 우리 사회 다양한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희망센터 사업 1차 기획과제의 일환으로 오늘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생운동선수들의 권리와 학교체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는 학생운동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운동부 내 폭력이나 심각한 권리침해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훌륭한 스포츠 스타들의 스포트라이트 뒤에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권리침해 사례는 그 수치와 관계없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 학생운동선수들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장 / 구 본 용

함께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들께서도 미리 언급하셨듯이 학생운동선수들과 관련한 문제해결은 더 이상 개별 학교나 지도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 스포츠의 열매를 향유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주체들의 책임 있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운동선수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과 운동을 즐겁게 병행할 수 있는 토대를 사회 전체가 마련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생운동선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사업적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처 및 주체들의 책임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역시 학생운동선수들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토론회에 함께 자리하셔서 우리 사회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 실태와 원인

한 태 롱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들어가기

1) 시투의 가출

1993년 첸 카이거 감독은 「패왕별희(霸王別姬)」라는 작품에서 1920년대 중국의 군벌 시대부터 문화대혁명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경극배우 두 명의 삶을 그렸다. 러닝 타임 170분의 대작을 보다가 나는 한 장면에 제대로 필이 꽂혔고, 그 장면을 지금 이 순간에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시투(이후 비운의 배우 장국영(張國榮)이 성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임)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강권에 이끌려 경극학교에 입학한다. 연일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과정을 견뎌내던 어느 날 그는 친구 한 명과 함께 학교를 빠져나간다. 일단 나오기는 했으나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서 시장통을 방황하던 그들은 훔친 만두를 손에 들고 귀에 익은 경극 음악이 나는 한쪽으로 이끌려 간다.

시장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3류 배우의 경극을 보면서 그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대성통곡을 한다. 눈물이 멎고 잠시 난 후 그들이 하는 말인즉슨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저렇게 잘할까’였다.

2) 운동부에 대한 추억

지금의 2배 정도인 60여 명이 한 반에서 지지고 볶던 중고등학교 시절, 키가 큰 편인 나는 언제나 반에서 가장 뒷자리에 앉았고, 덕분에 운동부원과 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반 아이들은 나를 매우 부러워했는데, 운동부 학생이 거의 수업을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1년 내내 책걸상을 2개 정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운동부원이라면 수업을 받지 않는 것을 당연시했고, 간혹 수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소위 서울의 명문 사립 중·고교였기 때문에 다수의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던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모습에 이골이 났는지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이뿐이라. 폭력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들이 처한 상황은 대단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학교, 특히 남학교의 경우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도 그러려니와 학생 간의 폭력도 일상적이었다. 최소한 나와 비슷한 연배들은 당시 상황을 그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서 그것을 잔혹사가 아닌 일상사로 받아들일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학교 운동부는 별종으로 취급받았으며, 학교에서 힘깨나 쓴다던 녀석들도 그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의외로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과 친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충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교생과 대다수의 교사가 응원을 갔던 시합 상황에서 멤버 체인지로 벤치로 걸어 들어온 선수에게 코치가 달려들어 귀 방망이를 올려붙이는 모습이라든가, 늦게 학교에서 나올 때 학교 운동장 한켠에 있던 체육관에서 울려 퍼지던 몽둥이 소리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던 바다. 무릇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인지라, 자신만큼 혹은 자신보다 더욱 험악하게 살고 있는 운동부를 만만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내가 교사생활을 했던 1990년대 초반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 사실 패왕별희의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내가 체육교사로서 운동부감독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내 책임 하에 있던 학생 선수들도 올림픽 출전 선수의 선전을 보면서 그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때문이었다.

3) 글을 쓰면서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은 불과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뀌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닌 현장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는 연구자의 느낌이다.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던 현장의 변화는 그 정도가 너무 급격하여 상전벽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여질 지경이다.

과거 학교 운동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는 체육학자에게 자살행위와 다름없었다. 학교 운동부가 한국체육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한국체육이 이루어 낸 영광스런 역사의 토대에 대한 정면도전이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이다. 일부 뜻있는 학자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찾잔 속의 폭풍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변화된다.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07.1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12)」, KBS 1TV 「쌈」의 「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 보도(08.2.11) 등 학교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학생운동선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급기야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합동으로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학교 내의 외판 섬’으로 지도자의 전횡이 가능했던 운동부에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관심이 투여되면서, 상황은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는 학생선수의 인권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한 가지다. 즉, 최근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학생선수의 인권 관련된 문제의 실태는 2011년 현재와 과거의 상황은 매우 차이가 있으며,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피한 확대해석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다만 학교 운동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크게 변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2. 학생운동선수 권리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선수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양적 통계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루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실제로 변화되는 상황을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 당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의 입장에서조차 연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여 되도록 사례에 의거한 질적자료를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사례의 구성은 전반적 선수관리 부실 및 선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폭력은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의 고 김종두 군의 사례와 학습권 보장 부실에 대한 장희진 선수의 사례, 운동부 관리 부실에 대한 시도교육청 관리 사례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2가지 사례는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며, 나머지 한 사례는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시·도교육청 단위의 대처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1) 전반적 선수관리 부실 : 고 김종두(2003년 사망)의 사례

2003년도 당시 전북체고의 레슬링 선수였던 김종두 학생은 10월 12일 목표로 하고 있던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망하였다. 병원 측이 발표한 사인은 탈수로 인한 장기손상이었는데 담당의사는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려다 탈수 증세로 쇼크를 일으켰다’고 전했다(한겨레신문 2003-10-12).



그림 6. 고 김종두 선수의 영정사진

기어갔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아무도 부축하는 사람이 없었고 표정이 꼭 ‘죽을 맛’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세계일보 2010-10-15).

김종두는 중학생 시절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땀고 2002년 KBS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체전 금메달 기대주였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보다 확실하게 우승을 하기 위해 체급을 내려 46kg급 그레코로만형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4~5kg를 줄이려고 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한겨레 2003-10-12). 이 사건이 발생된 후 이를 심층보도했던 한 TV 보도프로그램에 따르면 그의 코치는 2003년도 개최도시인 전주에서 메달획득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으며, 그 결과 무리한 감량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김종두 선수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무리한 감량을 견디다 못해 숙소를 빠져나왔고 이 때문에 시합을 앞두고 더욱 혹독한 체중감량을 해야 했다고 한다.

사실 체급운동에서 그와 유사한 선수관리 상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99년 3월에는 경기 화성시 B고교 체육관에서 이 학교 유도선수 이모 양(당시 18세)이 대회 출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려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땀을 빼다 열사병으로 숨졌다. 또 '96년 3월 서울 태릉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유도 국가대표 선수 정세훈(당시 22세·용인대) 씨가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우나에 너무 오래 있다가 심장마비로 숨지기도 했다.

2) 학습권 보장 부실 - 장희진의 사례

2000년 지난 5월 23일 대한수영연맹은 학업을 이유로 선수촌을 이탈한 장희진 선수에 대해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1년간 대표팀 및 상비군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태릉선수촌 입촌 연기 때문이었다. 장 선수는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개인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선수촌 및 수영연맹은 이를 거절했다. 수영연맹은 특정 선수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팀 전체의 사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선수 출신인 장창선 선수촌 촌장은 “국가를 대표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장희진 선수는 초등학교 때 치과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 미국에서 하버드대 스포츠클럽에서 3년간 체계적 수영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도 1주일에 3번씩 취미삼아 수영을 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했었다. 이러던 중 1999년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는 자유형 50m 한국신기록(26초 39)을 세우며 수영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장 선수 측은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선수촌 합숙훈련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당시 스포츠 외교관을 꿈꾸던 장희진 선수는 운동만큼이나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장 선수의 어머니는 “만 13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희진이가 격리된 선수촌에서 하루 5시간 정도의 훈련시간 이외에는 정해진 교육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후 사회각계의 호응과 대한체육회의 중재에 의해 선수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영계의 풍토로 인해 장희진은 이듬해 6월, 미국 매사추세츠의 유명 사립고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에서 장희진은 못다 이룬 수영 선수의 꿈을 펼치고자 했다. 그곳에서는 운동 때문에 수업을 빠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으며, 주 종목인 수영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는 조정부, 합창부, 수영을 통한 사회 봉사까지 해야 했다. 그리고 이는 ‘정상적인’ 성장과 학업의 과정일 뿐이었다. 장희진은 2005년 〈보스턴 글로브〉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수영선수’로 뽑혔으며 무엇보다 텍사스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장희진의 사례는 당시에 우리의 운동관행과 관련하여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크게 부각되지 못하며 사장되었다. 사족 같지만, 8년 후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여자 자유형 50m에서 25초 78을 기록, 1위를 하여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의 경영 대표팀으로 발탁되지만 이조차 미국 대학원의 학사일정과 겹쳐 최종적으로 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 운동부 관리의 부실 - 시도교육청별 선수 폭력피해 조처의 사례

아래에 제시한 표 1은 시·도교육청별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학생선수 폭력 피해에 대한 조처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일부 교육청이 누락되었다는 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2년간 폭력 발생이 25회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폭력으로 인해 교육청에 접수된 피해의 건수이며, 실제로 폭력이 일어난 건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25건이라는 수치는 당시 학생선수의 폭력과 관련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관리하고 장학해야 할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감안할 때, 매우 축소된 수치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런 수치는 교육청 단위에서 폭력과 관련된 적극적 장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한편 대부분 처벌의 대상자가 당사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지도자 해임 11건에 경고 7건, 학생처벌 8건으로 대부분 폭력의 당사자에게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이를 관리해야 할 학교의 체육교사나 학교장에게 대한 조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지도자에 대한 문책은 그들이 학교운동부의 관리자 중에서 가장 직접적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학생선수에 대한 관리체계상 가장 말단이라는 점에서 학교 스스로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표 1. 시·도교육청별 학생운동선수 폭력피해 징계조치 현황('06~'07)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폭력발생 건수	25	4	1	2	1	3	1	7	2	2	1	1
지도자 해임	11	1	-	-	-	-	1	5	1	2	-	1
지도자 경고	7	1	-	2	1	1	-	1	-	-	1	-
학생 처벌	8	2	1	-	-	2	-	1	1		1	-

3. 학생운동선수 권리문제의 원인

학생선수 인권문제의 근본원인은 구조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측면은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 요인을 의미하며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분류된다. 한편 개인적 측면은 운동부 활동을 통해 학생선수 개인이 구조적 측면에 순응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같은 측면들은 체육특기자 제도가 나타난 1972년 이래 지금까지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현재는 구조화된 측면이 강하여 학생선수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근절하기 힘든 이유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1) 제도적 측면 - 체육특기자 제도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운동선수로서 일정한 기량을 지닌 학생에게 학업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특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당종목 육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게 하며, 입학금을 면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선수로 육성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는 학생선수 개인이 운동만 잘하면 대학까지 순조롭게 입학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부나 학교활동과 같은 요인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72년만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혜택으로 받아들여져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체육계로 흡수되어 운동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학교 운동부가 한국체육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혜택이 축소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대학진학이 보편화되면서 도입 초기만큼의 메리트는 약화되었다 할 수 있다(이학래, 2010).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괄적 변화 양상은 표 2와 같으며, 이를 시기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기별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 방식의 변화(류태호, 2003)

구 분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주 관	국립교육평가원	대학 자율	대학 자율
기 준	입상실적자(4위 이내)	대학 자율	대학 자율
지 망	동일계 및 타계 지원 가능	동일계 및 타계 지원 가능	동일계 한정, 타계 전과 금지

(1) 제3공화국 시기

체육특기자제도¹⁾는 1972년 10월 5일 체육진흥계획의 일환으로 학교체육강화방안이

1) 제도 도입 당시 정확한 제도의 명칭은 체육특기생 제도였다.

공포되고, 이어 동년 11월 9일에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377호)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요지는 진학고사 성적과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입학할 허용하며, 등록금과 수업료 감면 등을 보장한 점에 있다. 이와는 별개로 다음 해 제도화된 병역특례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실제적으로 학생선수는 대학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자신의 운동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정책적 조처를 통해 한국체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같이 정권이 체육에 큰 혜택을 주었던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되지만 우선적으로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며, 또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스포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최초 계획자가 전두환 대통령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미리 기획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한 계획서가 청와대에 제출된 1달 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기 때문에 그 계획은 잠정적으로 폐기되었다 할 수 있으며, 제 5공화국 시기에 이를 계승하여 올림픽 개최가 성사되었다.

(2) 제5공화국 시기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던 당시에는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체육특기자 제도가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문교부에서 관리하던 체육특기생 업무는 신설된 체육부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이들을 국제 경기대회에 파견, 서울올림픽에 대비하던 체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미 체육특기자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었다.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는 학력저하, 특기자의 학교 내 이질 집단화 현상, 대학 미진학 특기자의 사회부적응 등이다. 특히 성적저하는 매우 심각했는데 1984년도 대학입시 성적 분포에서 전체 특기생의 67.34%가 40점 이하를 받고 있었다. 이런 체육특기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발 기준에서 학력기준치를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2001년까지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시되었다.

(3) 제6공화국 시기

1989년 체육부는 체육청소년 장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문제점으로는 체육특기생 선발 및 배정이 경기기록과 실적 위주, 인기종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능에 치중함으로써 학력저하 및 사회적응 미숙을 초래한다는 점, 특기생 혜택이 체육활동 지원에 국한되고, 진학 및 취업 등 사후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특기생에 대한 학력지원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선수만 혜택을 부여하는 기본 학력제 도입, 과학적 선발방식, 비인기종목(정책종목)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추진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1992년 3월 대입학력고사 체육 특기생제도를 개정하여 당해 연도 경기에 입상한 선수에 한해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학력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수능 점수 200점 만점에 40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1997년도에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최저학력기준을 수능 60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각 대학은 수능성적과 내신을 종합한 후 입학을 허락하여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4) 국민의 정부 시기

이 시기에 체육특기생제도는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된다. 2000년도 대학입학 시부터 체육특기생도 동일 계열학과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재학 중 다른 계열학과로의 전과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선수 스카우트 비리의 원천 봉쇄와 특기생의 수학능력 제고, 다른 분야 특기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체육계는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체육특기생의 체육계열 한정방침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그 근거로 운동부의 축소, 스카우트 문제의 악화 등을 이유로 내걸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운동부의 수는 증대되었으며, 스카우트 문제는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5) 소결

체육특기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선수의 진학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인데, 이는 학생선수의 인권과 관련하여 학습권 보장 미흡과 직접 연결된다.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을 통해 학습권보장제²⁾ 및 학력증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보완을 기하고 있다.

이 조치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도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동부 현장에서 가장 획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기존의 체육특기자 제도의 보완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어지기 때문에 근원적 처방으로

2)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하여 이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에게 대회출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

보기 힘들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을 치유하려면 체육특기자 제도, 특히 대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사회문화적 측면 - 학교 운동부 3주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1)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3주체

학교 운동부는 수요자, 공급자, 관리자라는 삼자의 상호관계 속에 그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수요자로서의 학생과 학부모, 공급자로서의 코치 및 감독, 대한체육회 및 경기연맹, 관리자로서 학교 및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세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류태호, 2006). 이들 주체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2) 3주체의 이해관계

학생과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 대학입학 특례, 직업시장 진출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의 구조 속에서 학원스포츠에 참여한다. 학생은 운동만 잘 하면 모든 것이 해결 된다는 생각에 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학부모는 자식을 출세와 자기과시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수요자는 실적주의와 직업적 보신주의, 연맹 간 경쟁주의로 학생선수를 압력과 통제 대상의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순회코치의 경우 당장의 경기실적을 내지 못하면 직업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학습보다 연습, 인권보다 신체적 폭력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게 된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는 학부모와 관리자의 암묵적 동의를 받으며 허용되고 있다.

이를 관리해야 할 관리자 또한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가운데, 학교 운동부가 만들어 내는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현장 운동부 감독교사 대상 면담 결과 현재 학원스포츠 문제의 대부분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장학활동만 정상화 되면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체육과학연구원, 2009).

그러나 전국대회 입상에 대한 가산점 제도로 인해 학교 운동부의 관리자인 학교와 교육 지원청 관계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 학생선수 관련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시기가 되면 당장의 업적평가와 향후 가산점을 받기 위해 일부 장학사는 운동부의 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오히려 수업을 받지 않고 운동에 전념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던 사례를 전하는 체육교사도 있었다. 사실 지역단위에서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한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관련 정책이 현장 까지 침투하는 데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힌 3주체의 결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돌아가며 궁극적으로 이는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적합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한 마디로 가장 교육적인 장소에서 가장 교육적이지 못한 사안이 발생되며 이에 대한 대표적 희생자는 학생이 된다.

3) 선수 개인적 측면 - 벙커 멘탈리티(Bunker Mentality)의 형성

학교 운동부의 독특한 문화가 제도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선수 개인은 스스로를 적응시켜 가며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이 같은 과정은 학교 운동부 하위문화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내면화의 주체가 청소년기의 학생선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학교 운동부 문화가 교육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과정 또한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 좋은 경험이겠으나, 현재 우리의 학교 운동부 문화의 수준을 감안컨대 이는 상당히 큰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하겠다.

(1) 학교 운동부 문화의 특성과 학생운동선수가 체득하는 문화적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학교 운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존재한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운동부가 지니는 문화적 특성은 ‘위계적 관계’, ‘승자 독식의 세계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위계적 관계

학원스포츠의 기본단위인 각 운동부들은 우선 감독, 코치, 주장, 선수 등으로 팀으로서의 일반적 위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엄격한 위계인 학년별 선후배 관계가 존재하며 그 사회 속에서 나이와 학년에 따른 서열은 한국사회의 그 어떤 위계보다 강력하다. 이 구조는 일단 조직구성원이 되면 어떤 개인이라도 굴복시키는데 혹은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비난이나 징계가 따르게 된다(정희준, 2004).

학생선수는 독립된 시·공간 속에서 일반학생과는 떨어져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기, 선·후배 간의 교육적 관계보다 위계적, 억압적 관계맺음에

익숙해져 있다. 학생선수는 ‘교육’이 아닌 ‘훈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열문화에 따른 위계적 관계를 체험하며 구타와 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나. 승자독식의 세계관

한국사회 자체가 승자를 위한, 승자에 의한 사회이지만, 특히 스포츠계는 이런 경향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를 두고 일부 연구자(김덕희, 2007)는 화려한 영광으로 포장된 적자생존의 논리가 우리 사회 어느 분야보다 명든 곳이 스포츠이며, 스포츠는 승자독식의 사회가 용인되고 권장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이미 올림픽의 축소판이다. 학생선수는 ‘무한경쟁’ 속에서 ‘학생’보다 ‘선수’로 자연스럽게 조기 편입되지만, 그러나 스포츠계의 경쟁정도는 일반사회의 경쟁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이런 경쟁체계 속에서 탈락자의 속출은 불가피한 형편이다. 체육과학연구원(2009)에 따르면 본격적 선수생활을 시작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매년 전체의 20%, 대학입학을 하는 시기에 40% 이상, 대학 1, 2학년 때 40%가량이 중도탈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운동부 문화 습득의 메커니즘

이 같은 운동부 문화의 특수성은 학생선수 개인에게 운동부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데, 우리 운동부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은 학생선수가 운동부 문화를 습득하는 정도를 증폭시키게 된다. 특히 운동만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학교 운동부를 고립된 섬처럼 위치시켜 학교 운동부 문화를 마치 그들에게 유일한 진리로서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는 스포츠 사회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커 멘탈리티로 이해가능하며, 이런 심리적 과정을 통해 선수는 사회화되고 있다.

가. 고립된 섬으로서 학교 운동부와 병커 멘탈리티의 형성

일부 연구자(류태호, 2005; 김덕기 2007)는 운동부를 학교 내의 ‘고립된 섬’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교육공백과 합숙으로 인해 일반 학생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가운데,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고 있는 운동부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문화적 흐름과 배치된 가운데 그들의 문화는 독자성을 지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운동부 문화의 지속적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선진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관련 연구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신체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운동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학자(Albert, 2004; Curry, 1993; Pike, 2004, 2005; Young, 2004)에 의하면 선수들은 자신을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해하며 문화적, 신체적으로 외부 세계와 격리시키며 외부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가운데 내부자로서의 강한 사회적 연대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특수부대의 부대원에게서 느껴지는 결속력과 유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문화적 결속력이 존재하며 자신의 일이 전쟁의 최전선에서의 활동과 같다는 식의 사고를 벵커 멘탈리티(Bunker mentality)라고 표현하는데, 학생선수는 운동부의 집단역학 관계에서 이를 내면화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선수들의 벵커 멘탈리티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스포츠 장면에서 요구하는 우선적 가치는 '경기에 헌신', '위험의 감수 및 고통에 대한 저항', '맹목적 성공의 추구', '탁월성에 대한 갈망'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부작용이 존재한다. 즉, 이 같은 스포츠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약물복용, 신체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 훈련, 신체 학대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는 교육적인 상황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운동부 문화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과잉동조 행동을 영웅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선수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가 이런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고, 과잉동조 행동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나. 한국적 상황에서 벵커 멘탈리티의 증폭 시스템 - 합숙

우리의 경우 이런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이 합숙이다. 현재 초, 중학교는 합숙이 금지되고 있으나, 2006년에만 하더라도 초, 중, 고등학교에 868개의 합숙소가 존재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다. 개인적 경험으로 모 중학교 축구부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30명을 스카우트하여 그들이 경기를 실시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합숙하는 예도 알고 있다.

합숙소라는 공간에서 학생선수는 아침운동, 오전운동, 오후운동, 야간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내용, 동일한 방법, 동일한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가운데 사회전반의 문화적 추세를 받아들이며 정상적 자아정체성을 지니고 성장 하리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선수 개인은 운동부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내면화되는 가치가 교육적이라면

이 또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학교 운동부 문화는 사회적 수준에서 허용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합숙은 병커 멘탈리티의 ‘병커’를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화된 이들은 사회전반의 의식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한국체육이 일반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운동종목이라면 이 또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표면적으로 일반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른 사례가 존재한다. 올해 초에 나타난 케이 리그(K-League: 한국프로축구의 최상위 리그)의 승부조작 사건이다. 승부조작은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일탈행동이다. 그러나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공모가 필요한 경우 서로간의 연대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이전부터 이런 행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학생선수 개인이 이런 연대의 구조와 연대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케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합숙을 통해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오랫동안 잠재되어 왔던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다.

4. 글을 마치며

학생선수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고구마 캐기에 비견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여 연구를 해보면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계속 캐다보면 전체가 같은 줄기로 엮여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인권문제에 집중하여 현상이 아닌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그 것이 의외로 다른 문제, 즉 제도적, 문화적, 개인의 심리차원 등에 이르는 총체적 문제로 확대된다.

사실 이렇게 모든 사안이 얽혀 있는 이유는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사안이 3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거치며 구조적으로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런 사안 간의 공고한 연결구조는 그동안 정부주도의 각종 개선사업을 무력화시키며 학교 운동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해왔던 것이다.

그 사이 문제제기는 있었으되, 문제제기를 했던 이조차 문제의 본질은 피해갔다. 개인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파악된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그 전체적 연구 맥락에서 대입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에 이제는 누구도 손을 쓰지 못할 만큼 이 문제의 크기는 확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현장의 분위기는 쇄신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의 관련대책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의 관행, 즉 개별 사안에 대한 대중적 대처에서 벗어나 학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상호협조하면서 지금까지 부각된 다양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마가편이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다.

우선 정책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게 당부하고 싶다. 체육특기자 제도 하에 대입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가 전체적 대학입학과 맞물려 있으며,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자율권을 크게 보장받고 있는 대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하듯 지금까지의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그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입학과 관련된 문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운동부 관련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개선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한편 학교의 책무성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다. 학생선수 인권문제의 해결이란 어쩌면 매우 간단히 풀릴 수 있다. 학교가 학생선수는 학생이라는 인식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현장은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문제에서 매우 획기적 조치를 내 놓으며 전체적인 인권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과 선수를 구분하는 이중 잣대에서 벗어나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는 조기에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게 가능하다면 더 이상 학교 운동부는 '학교의 섬'이 아니게 되며, 일반 학생의 수준과 동일한 인권적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인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육계 스스로의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운동부 문제의 개선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회, 정부 등 체육계 외부의 압박에 의거한 바 크다. 이런 전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범체육계는 주체적으로 이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다. 당사자의 문제는 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 마디만 하고 싶다. 30년간 외부세계와 차단되었던 학교 운동부가 이제 담장너머의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이 이룩한 엄청난 성취에 즐거움을 느꼈다면, 지금쯤 이런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들을 독려하고 채찍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관심 속에서 학교체육과 나아가 한국체육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운동선수의 권리보호 정책 발전방안

김 두 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I. 서론

오늘날에 있어서는 스포츠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해소와 스포츠 문화의 성장발달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생리적 가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적 가치,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가치 등 통합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국가산업 및 국민복지 사업으로 중대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은 엘리트스포츠에서 세계 10위권의 스포츠강국으로 발전했다.¹⁾ 한국의 국력이나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대회 등 4개의 세계대회를 통해 서이다.²⁾

이와 같은 스포츠 산업의 발전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일상화, 직업화, 국제화에 따라 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0~24세의 아동·청소년인구는 1,4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5%를 차지하고

1)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스포츠란 신체활동, 재미·오락적, 문화적 역할이 가미되고 정신적, 감정적 측면 등 내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여가나 레크리에이션도 포함되는 의미이다. 상기 3요인에 추가하여 보다 광의의 스포츠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① 스포츠 용구의 개량, 기록의 정밀화, 정보·미디어의 발달, 스포츠산업의 대두 등으로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의 요소가 더하여졌다는 점, ② 마린스포츠, 마운틴스포츠, 스카이스포츠 등 뉴스포츠가 등장했다는 점, ③ 하이킹, 조깅, 덤벨체조 등 스포츠의 다양화와 고령사회를 반영한 건강스포츠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 ④ 요가, 명상, 선자, 태극권 등 신체운동과 정신적 운동을 융합한 스포츠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 ⑤ 여가를 즐기고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레크리에이션이 활발해지고 있다(김두현·최선화, "현대스포츠법과 안전", 한울출판사, 2009, 3-4쪽).

2) 우리는 '86 서울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대회, '97 동아시아경기대회, 2000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2002 한·일월드컵대회, 2002 부산아시안게임, 200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ASEAN), 2010 군고위급회의(CHOD), 2010 서울G20정상회의, 2011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등 국제대회 및 회의에서 법질서유지를 통하여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킨 바 있다(김두현,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호안전관계법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011. 5. 20, 96쪽).

있고, 9~24세의 청소년인구는 1,0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0%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1,006만 명, 이 중에서 학생인구는 943만 명(대학원생 제외)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³⁾

2009년 현재 체육계열의 중·고등학교는 전국에 소재한 체육중학교 7개교 및 체육고등학교 14개와 더불어 1개 반을 특기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제주남녕고를 포함하여 총 22개가 있다.⁴⁾ 체육계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수는 체육중학교 850명, 고등학교 3,600명을 포함하여 총 4,450명이며, 소속 코치는 총 297명의 규모이다.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는 전문체육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소속 선수 중 국가대표 28명, 후보선수 297명으로 총 325명의 대표선수를 보유하고 있다.⁵⁾

학생운동선수란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체육특기자라는 명칭으로, 그리고 운동선수⁶⁾, 학생운동선수, 스포츠 선수, 엘리트 선수, 운동부원, 운동부 학생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 학교체육법안 제2조 제4호, 박영아 의원 대표발의안 학교체육진흥법안 제2조 제4호에서 학생선수란 “학교운 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생선수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한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상호부조 기능이 해체되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다양한 인권문제들—폭력, 왕따, 학교붕괴, 경쟁적 입시체제, 체벌, 성폭력, 노동착취, 자치활동 규제, 취약계층 청소년의 기본적 사회보장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으로 개선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스포츠 승부조작, 스포츠

3)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백서」, 2010, 32, 246-247쪽.

4)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선수는 전체 68,634명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박영아, 학교체육진흥법 공청회 자료, 2010. 12. 17, 18쪽).

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2009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0. 7, 182쪽.

6)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085호, 2010. 10. 5 제정) 제27조 제1항.

7) 김동현·윤양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11, 60-61쪽.

선수에 대한 성폭력·폭력·테러 등이 난무하여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 스포츠 정신이 망가지고 있다.

한국 스포츠계도 고질적인 폐습으로 지적되어 온 대학의 부정입학, 선수의 약물복용·폭행·성폭력 등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생선수폭력은 학생신분으로서의 학생 간(선후배나 동료 간) 또는 학생 지도자와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금품갈취, 욕설, 협박, 괴롭힘, 따돌림, 성폭력, 각종 불이익, 징계를 빙자한 구타나 기합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 분야에 만연된 문제들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하지만 정작 스포츠 현장의 내부에서는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조차 이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현장 내부의 인식 상황과 체계적인 인권침해 예방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은폐, 축소, 왜곡하는 데 급급한 일부 협회와 연맹, 학교,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문제점이 피해자의 보호는커녕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학생선수의 폭력, 성폭력 등 권리보호의 이론적 고찰과 학생선수 권리 보호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학생선수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맘껏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고품격의 선진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II. 학생운동선수 권리 보호정책의 실태

청소년육성 정책은 2008년~2012년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부처변경과 청소년환경의 급변에 따라

8)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조 제4호.

동년 11월 25일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정책 중에서 청소년 인권, 청소년 건강 및 안전, 청소년 성보호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실태

(1) 학생운동선수 권리 강화정책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권리보장 등이 학생선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학생선수의 대다수가 청소년층 인구에 해당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인권이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성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인권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개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며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스포츠는 행복추구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인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9)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장 학생의 인권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2011년 5월 27일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에서 학생의 인권을 “자유권, 평등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 평등권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학생의 인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학생 인권 협력강화 및 여건 개선에서는 청소년인권정책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 구축, 가정·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의식 개선,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강화, 청소년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등의 정책을 수립했었다. 이 중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강화는 ① 학생운동선수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② 학교 내에서의 학생인권 보호 및 지원, ③ 청소년헌장 개정을 통한 청소년 인권 실효성 제고 등을, 그리고 청소년 개개인의 인격적 학교문화 조성은 ① 학교 내 폭력,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 간 공동 대응, ② 가·피해 학생을 위한 지역 및 시도교육청 지원 강화, ③ 청소년 인권영향 평가제의 도입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 체계 마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 제고의 정책을 내세웠다.¹⁰⁾

현재 청소년 인권교육과 관련되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청소년관련학과의 교과목(필수영역)으로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이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으로 1급 청소년지도사에 ‘청소년 인권과 참여’, 2·3급 청소년지도사에 ‘청소년육성제도론’, 1급 청소년상담사에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¹¹⁾

반면 각 체육대학의 교과목에는 ‘스포츠 법학’이나 ‘스포츠 인권’에 관한 교과목은 전무하며, 다만 일부 대학원에 ‘스포츠법’, ‘스포츠와 법’이라는 과목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다.

10)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201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 1, 33-35쪽.

11)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국가자격 검정과목의 연혁을 보면, 1996년 7월 30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 1·2급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관계법규와 행정’이, 1999년 8월 7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1급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인권과 복지’, 2급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에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이 필수과목으로 규정)이, 2005년 3월 18일 1급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인권과 참여’, 2·3급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제도론’이, 1급 청소년상담사는 졸업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이 규정되어 왔다(김두현, 「청소년법과 행정」, 삼영사, 1997, 258-262쪽; 여성가족부, 전거서, 375-382쪽.

(2) 학생운동선수의 건강과 안전 증진정책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6항에서는 여자, 노인, 청소년, 생활무능력자 등에게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전권이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청소년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자는 헌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5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이용의 안전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¹²⁾의 시행을, 그리고 2009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을 마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시달한 주요 정책 과제 10가지 중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7.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 강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여건 조성은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청소년 건강 추진체계 정비 정책을 수립했었다.¹³⁾

그리고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의 의무(제2조의2, 제3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및 관리(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제6조)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 여건 조성으로 다양한

12) 김두현, 전게서, 597-647쪽.

13) 대법원의 2004년도 학교지도자의 학생체벌 가이드라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①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②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 ③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④ 학생의 성별·연령·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의 예를 들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006년도 학생체벌의 가이드라인으로서 ①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하며, ②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③ 방법이 적정해야 하며, ④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선수에 대한 체벌에도 적용·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스포츠 인프라 활용을 통한 스포츠 활동 증진, 다양한 레포츠 활동 개발·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운영으로는 지역사회 내 폭력예방 협력망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으로는 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 상담자 양성 및 활동지원 강화, ② 폭력피해·가해자 사회적응 지원, ③ 민간부문과 연계한 청소년폭력 예방 활동 강화, ④ 청소년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비, ⑤ 학교폭력 대책기구의 재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구체적 정책으로 수립했었다.¹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3) 학생운동선수 성보호 강화정책

여성가족부는 2004년 밀양 집단성폭력사건,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 등과 같이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증가하는 등 범죄 양상이 변화하면서, 전자팔찌 등 범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성폭력을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관심이 모아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을 보완·시행해 오고 있다.¹⁵⁾

그리고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학생선수 권리 보장을 통한 인권보호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학생운동선수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우선 청소년 성보호 체계 정비에서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강화를 위해 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② 청소년 성보호 제도

14)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201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1, 35-38쪽.

15) 윤상민,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 규제와 대책”, 「스포츠와 법」제14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2, 69-73쪽.

강화 등을, 그리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재범방지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②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 ③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치료 확대, ④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가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범죄 피해청소년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① 성범죄 피해청소년 지원 및 인권보호, ② 성범죄 피해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확대, ③ 사법절차 상에서 성범죄 피해 및 성매수 대상 청소년 인권보호 등을, 그리고 성범죄 가해청소년 선도 및 교육을 강화를 위해 ① 지능화된 성범죄 가해 청소년 교정 시스템 구축, ② 청소년 성범죄 상습화 예방을 위한 선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성범죄, 폭력, 인터넷게임중독, 선정적 매체 환경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요인이 급증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청소년육성업무가 이관되면서 여성·가족 정책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을 통합적 청소년 정책, 보편적 청소년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 수정·보완하였다.¹⁶⁾

2. 분석

(1) 학생운동선수 권리 보호정책의 미흡

오늘날 민주화를 이루게 되면서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선수청소년에 있어서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고로 청소년시절은 꿈의 시절이며, 낭만의 시절이며, 아름다운 인생의 푸른 시절이라 하겠으나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학생선수의 인권보호권 및 정책이 미흡하고 그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 간 협조체계가 형식적인 면이 있다. 스포츠계의 남성적 문화는 폭력문화를 허용하는 요인으로, 스포츠가 연상시키는 육체적인 힘과 건강하고 강인한 육체는 일반적 의미에서 여성적 이미지이기보다 남성적

16) 박난숙,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정·보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통권 239호), 2010.11, 2-5쪽.

17) 김두현, 전계서, 3쪽.

이미지와 결부된다. 또한 체육계 현장에서 학교체육교사, 생활 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지도자나 의사결정권을 갖는 조직관계자들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현상 역시 체육계가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적 사회임을 증명한다.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별과 같이 특정한 위계질서와 권력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우선, 큰 틀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¹⁸⁾ 및 기본적 인권보호라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는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나 스포츠 성폭력의 경우에는 훈련 도중 지도자와 선수 간의 신체접촉이 많고 합숙훈련이나 전지훈련 등으로 집을 떠나 지도자와 선수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며, 그리고 상하 위계구조가 명백히 존재하는 운동부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운 점이 존재이다.

위 계획안의 과제들 중 아직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하나의 완결성 있는 실행 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폭력, 성폭력 예방 근절 방안'으로 2010년 말부터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스포츠인권익센터 상담실'의 개설¹⁹⁾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서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선수육성 및 복지에 치우친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과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규정'이라는 자체규정만으로 폭력과 성폭력 등과 같은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와 선수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기존의 업무 관행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구현될지 의문도 제기된다. 또 '학생선수보호규정 준수 철저' 수준의 지침으로 과연 기존 학생선수보호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한계를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18) 2011학년도 K대학 체육대학 37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을 분석한 결과에서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재학 중 정규수업 참여를 보면, 모두 참여(76.4%), 오전 또는 오후 수업만 참여(15.4%), 거의 참여 못 함(2.9%), 비정기적 참여(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수업에 모두 참여한 학생 비율은 일반학생(95.6%)이 특기자 학생(25.0%)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부 수업시간에만 참여한 학생의 비율은 특기자 학생(48.7%)이 일반학생(2.9%)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특기자 학생의 10.5%는 정규 수업에 거의 참여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관용·백근영, 「2011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2011. 8. 7쪽).

19) 대한체육회(KOC)는 '스포츠인권익센터상담실'을 2010년 11월 2일 개소하여 스포츠인포털, 은퇴선수포털 시스템을 구성하여 스포츠 인권보호 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고민상담, 은퇴 후 진로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스포츠인들의 권익향상 지원 서비스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자 설치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선수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교육 및 홍보, 스포츠인권익센터 설치,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스 제작 등의 스포츠 인권보호 활동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스, 2011 자료 및 <http://sports-in.sports.or.kr> 참조).

될 것인지 우려되며, 여성가족부에서의 업무의 한계도 있다.

(2)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정책의 부처 간 비현실적 협조체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체육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선수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특수체육의 체육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의 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그동안 문교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의 조직의 시대적 변천을 통해 통합, 분산, 조정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책에서도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부터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문제는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교육과학 기술부의 체벌지침과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중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라는 체벌의 정도에 대한 정책의 마찰이 있었다.

(3)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정책의 실효성 및 효과성 미약

우선 학생선수들이 폭력,²⁰⁾ 성폭력²¹⁾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설문

20) 대한체육회의 ‘선수폭력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에는 학생선수(초·중·고·대 선수 포함)의 약 78%가 신체적인 폭력(구타)을 경험했다고 했고(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개연구보고서, 16쪽), 2010년에는 선수 1,803명, 지도자 210명 및 학부모 110명을 대상으로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2.6%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희망센터, 학생운동선수 실태 분석 계획, 2011. 6, 4쪽).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국 초·중·고생 3,5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2.7%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그 피해율도 11.8%이어서 전년도인 2009년 9.4%와 비교해 볼 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례와 엽기적 수준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더욱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학교폭력연구」 제1권 제1호, 2011. 1, 70-74쪽). 또한 2011학년도 K대학 체육대학생 37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을 분석한 결과 신입생들의 21.3%가 고등학교 때 폭력(위협, 구타, 체벌 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조사의 기피로 인하여 학생선수의 환경 분석이 취약하다.

그리고 학교 내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을,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도록 규정²²⁾하고 있지만 교육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1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대부분의 구타를 포함하는 폭력행위는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운동부 내 상급자(선배) 등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지도자 처우의 경우²³⁾ 경상북도 교육청의 전임코치 관리지침에 대한 예를 들자면, 계약해지 조건으로 개인종목은 계약 후 2년간, 단체 종목의 경우 계약 후 3년간 전국(소년)체전에서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체육계의 오랜 폭력이 관행화되어 학생선수 자신이나 지도자, 심지어 학부모들까지도 선수로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고 내면화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과 그 방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조사기관 간 78%와 32%는 너무 큰 격차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체육교육 및 운동 등에 대한 정책은 합법성,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 행정의 기본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실적 지상주의 늪에 빠져

13.3%보다 상대적으로 37.6%가 더 높게 나타났다.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특성별로는 특기자 학생(32.4%)이 일반학생(4.5%)보다, 성별로는 남학생(12.9%)이 여학생(7.5%)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횟수는 월 1회 미만(39.4%), 월 1-3회(27.3%), 월 4-6회(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폭력피해 횟수가 월 4-6회보다 많아질수록, 특성별로는 특기자 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횟수의 폭력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는 '말로 위협 또는 기압'(51.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손으로 얼굴, 머리 등을 때림'(21.2%), '막대, 빗자루 등으로 맞음'(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정도가 '손으로 얼굴, 머리 등을 때림' 이상에서 특기자 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선배가 61.3%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코치·감독(19.4%), 교사(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두현·김정진, 2010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2010. 8, 58쪽; 최관용·백근영, 전계연구보고서, 47쪽).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조사방법에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K대학 체육대학생들의 고등학교에서의 성희롱 또는 유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10.1%로 나타나 이는 2010년도 9.9%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학생선수의 성폭력 정책은 재고해야 할 일이다. 이 중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은 2.5%,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된 학생은 1.3%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반학생이 10.3%로 특기자 학생 9.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김두현·김정진, 전계연구보고서, 46쪽; 최관용·백근영, 전계연구보고서, 38면).

22) 이것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제32조의 규정이다.

23) 이들의 한 달 월급은 130만원에 불과하고 이 월급 및 계약연장이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에 따라서 주이지게 된다(김동현·윤양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11, 76쪽).

선수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는 신세가 되어 버렸고, 정책 과제로 제시된 일부 정책들은 그 효과성이 미약할까 우려된다. 기존의 정책에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책구성에 있어 현실성을 배제한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선수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도 상기의 폭력문제와 같다.²⁴⁾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결과 직장운동부(여성팀)의 경우 남성지도자만 배치(60%), 남성지도자와 여성지도자 함께 배치(34%), 여성지도자만 배치(7.4%) 등으로 나타나 여성지도자의 고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스포츠계에서 대부분의 지도자가 남성이고 여성 지도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성지도자에 의한 여성선수의 성폭력은 근절되기 어렵다.²⁵⁾ 최근 한국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바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2010년에 이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바 학생선수의 성폭력의 문제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학생운동선수 대학특례입학제도의 구조적 문제

최근 한국사회와 문화에는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능력 제일주의와 ‘최고만 되면 모든 것이 보상된다.’는 최고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가 연합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학생선수는 경쟁적 경제논리에 의한 능력주의가 학원스포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상급학교 진학, 대학특례입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원스포츠에 참여하여 학생의 신분이기보다는 오히려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운동만 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또 포기를 강요받고 있다.

수능시험이나 학생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전국체육대회 및 관련 스포츠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승부조작 및

24) 국가인권위원회(2008)가 발표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학생선수 1,139명 중 63.8%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언어적 성희롱이 58.3%, 강제 추행이 25.4%, 강간 및 강제적 성관계 요구 사례도 각각 1%와 1.5%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희망센터, 전개보고서, 4쪽). 그리고 2010년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현장에서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성인선수 1,830명, 지도자 210명, 학부모 110명 등 총 2,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는데, 여자선수 가운데 성희롱 26.4%, 성추행 및 강간이 1.9%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해자는 지도자 62.9%, 선배 선수 31.1% 순이었고 피해 장소로는 운동장 24.7%, 운동부실 21.1%, 합숙소 16.7% 순으로 나타났다(윤상민, 전개논문, 68-69쪽).

25) 국가인권위원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개연구보고서, 48쪽.

부정입학의 마수에 휘말리기도 한다. 즉 학생선수 대학특례입학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안전시설을 갖춘 교육공간으로서 학교체육시설 및 합숙소가 많지 않고, 학교건물에 대한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화재에 대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 실적지상주의로 인하여 전문지도자(코치)들은 성인들이 구사하는 고단위 기능지도와 강도 높은 훈련방법을 택하고 있어 학생선수들은 인권에 제한받으며, 코치들의 심판매수, 승부조작, 상위입상을 위한 편법에 동원되고 있는 점, 각 시·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실적이나 체력우수자로서 체육특기자로서 진학할 수 있는 점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²⁶⁾

한 예를 들면, 서울소재 H대학 전문체육분야의 대학입시전형의 경우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0년 이후 대학의 자율 규정에 따라 경기입상실적 90%, 학생부 10%를 반영하고 수능은 미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체육분야의 특정한 레저스포츠종목의 경우에도 전문체육분야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학계는 기존의 전문체육 정책에 대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²⁷⁾

Ⅲ. 학생운동선수 권리 보호정책의 발전방안

1. 학생운동선수 인권 범주의 정립과 권리 보호정책의 인식전환

우선 학생선수에게는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학습권 등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체육 위주의 스포츠 정책의 권리 친화 및 침해 예방정책의 수립, 현장의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학생선수 권리의 범주는 헌법상 신체안전권과 건강권 및 보건권으로 구분하여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체안전권으로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26) 체육특기자 제도 문제의 자세한 내용은 최정일, “「학교체육법」 제정상의 몇 가지 쟁점과 제정시안의 분석”,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28회 학술대회 「스포츠관계법령의 입법적 과제」, 2009. 6, 110~117쪽 참조.

27) 국가인권위원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개연구보고서, 23-24쪽.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권자를 비롯한 국가권력이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스포츠 행위의 전제가 되는 학생선수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헌법에서 신체자유권을 정한 만큼 모든 사람이 어떠한 스포츠를 할 것인가의 결정의 자유 등은 모두 선택의 자유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동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체육시설업의 안전시설과 동법 제24조 안전위생 및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여 학생선수 등의 안전과 스포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건강권으로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와 국민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15조에서는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선수의 보호 및 건강관리를 보장하고 있다.

셋째, 보건권으로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보건권은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개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스포츠 인권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등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는 학생선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정책을 펴야 할 의무를 가진다.²⁸⁾

이외에도 학생선수는 일반학생들과 똑같은 학습권²⁹⁾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³⁰⁾

28) 김은경은 스포츠권의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 행복추구권, 자유권(신체, 집회결사, 직업선택), 사회적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김은경, 「스포츠와 법」, 보경문화사, 2006, 72-74쪽), 김상겸은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을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근로의 권리, 근로3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김상겸, “스포츠선수의 헌법상 권리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국제학술대회-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07. 210, 252-260쪽).

2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상겸,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스포츠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18호), 2009. 2; 강구민,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그리고 권리 보호정책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학생의 인권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에서의 선수지도자가 청소년 인권관계법규 및 스포츠관계법규를 제대로 교육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선수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4. 체육인의 복지’를 ‘4. 체육인의 복지 및 인권’으로 개정하고, 학생선수의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의 법률화³¹⁾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가이드라인’³²⁾ 정착, 대학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및 대학에 스포츠안전관리학과 설치,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실태조사·상담·치료·중재조정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 지원센터(가칭)’³³⁾의 설치(대한체육회 등 연계)가 요구된다. 추가로, 정확하고 정기적인 학교운동부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중도탈락 선수를 포함한 정확한 학생선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관계이므로 학생선수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³⁴⁾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성과 그 처벌에 대한 엄격성이 필요하다. 2010년

2010. 11, 101~120쪽; 김동현·윤양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11, 57-81쪽 참조.

- 30) KIST 신경과학센터 김중현 박사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늘고 혈액 속에 있는 많은 성장인자가 뇌신경 줄기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운동을 할 경우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평소 운동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두뇌 활동엔 어떤 차이가 나는지의 뇌과학 연구를 위해 칠판바퀴를 돌리며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생쥐와 틀 안에 갇혀 거의 운동하지 않는 생쥐를 비교 분석해봤다. 한 달이 지난 뒤 기억력과 행동에서 확연히 차이가 났다. 물이 차 있는 미로를 반복해 지나는 실험에서 운동한 생쥐는 빠르게 헤엄치며 기억한 목표를 찾아 가지만 운동을 안 한 쥐는 주저하며 길을 찾지 못했다. 운동한 생쥐는 평균 70초 만에 통과한 반면 운동을 안 한 쥐는 평균 110초나 걸렸다. 그 결과 운동을 하면 기억과 학습능력을 향상된다는 결론을 얻었다(2011. 7. 25 MBC 뉴스 www.imnews.com).
- 31)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박영아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10조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이수하도록 감독하고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나 일정한 경기대회 출전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 32)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11. 6; 영국의 “Standards for safeguarding and protecting children in sport” 등이 있다.
- 33) 경기도 교육청에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학생참여위원회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상임 5명 이내)을 각각 두도록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마련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대응, 신고 및 접수,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조사, 진행 및 심의, 분쟁조정, 또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방안 등이 자세히 마련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 34) 폭력을 행한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1차 적발시 5년 이상의 자격정지, 2차 적발시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 적발시 영구제명과 형사책임, 그리고 폭력을 행한 선수는 앞의 규정에 따라 1차 적발시는 당사자간 중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생선수는 당해 학교급 선수

밴쿠버 동계올림픽 3관왕이었던 중국 왕명(여, 26세)은 금메달리스트이고 앞으로도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였지만 폭력을 휘둘러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과감하게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국내·외 대회에 출전을 정지시킨 사례를 우리는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³⁵⁾

셋째, 학생선수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법규를 마련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도 있겠지만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 대처법으로는 신체에 대한 학생선수의 권리를 확실하게 정립시켜야 한다. 명백한 예방정책의 기본지침 수립, 즉 각 학교 및 스포츠단체에서는 예방대책의 시행, 교육, 훈련, 신고, 감시, 평가 시스템의 규칙³⁶⁾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선수들이 성적 갈등상황에서 ‘내 몸에 대한 주인의식과 당당함’,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 ‘주변의 영향력과 상관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 예측과 주체적인 선택’,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발휘³⁷⁾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³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도자와 선수 간 예방교육 이행, 즉 미국의 NHFS(미국고등학교 체육연맹)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성폭력 예방 10계명’³⁹⁾과 같은 지도자와 학생

자격 정지, 기타 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자격 정지, 2차 적발시 5년 이상의 선수자격 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 정지 병과, 3차 적발시 영구제명과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성폭력 범죄 행위시는 영구제명하되 성폭력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차 적발시는 당사자 간 중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생선수는 당해 학교급 선수자격 정지, 기타 등록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자격 정지, 2차 적발시 5년 이상의 선수자격 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정지 병과, 3차 적발시 영구제명, 그리고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sex)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로 1차 적발시 당사자 간 중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생선수는 당해 학교급 선수자격 정지, 기타 등록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자격 정지, 2차 적발시 5년 이상의 선수자격 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정지 병과, 3차 적발시 영구제명과 형사책임을 진다(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스」, 2011, 4-10쪽).

35) 동아일보 2011, 8. 6. 25쪽.

36) 'IOC의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스포츠인스포츠'(sports-in.sports.or.kr)에 있는 성폭력의 준수사항과 스포츠단체의 준수사항 참조.

37) 자기 몸의 주인은 자신이므로 ① 나쁘거나 애매모호한 신체 접촉을 받을 때는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 ② 애매모호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때 그 의미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권리, ③ 신체적 접촉에 대해 이상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권리, ④ 강요나 유혹에 의해 신체적 접촉을 받지 말아야 할 권리, ⑤ 이상하거나 불편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면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 ⑥ 신체적인 접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약속이나 비밀을 안 지킬 수 있는 권리, ⑦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몸의 주인도 상대방이다. 따라서 상대방도 똑같이 위와 같은 권리를 갖기 때문에 상대의 몸 역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38) 국가인권위원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개보고서, 86-88쪽.

39) 이것은 ① 성적 농담 금지 :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 혹은 학생선수 앞에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언어 혹은 노골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② 성적인 영상물 제공 금지 : 교사와 코치들은 학교를 포함한 어

간 서약서를 만드는 등과 같이 지도자와 선수 간의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즉 사법절차의 양형과정에서 엄중한 처벌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줘야 하며, 관계기관의 제반 근절대책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법과 정책에 따른 피해자 지원체계 확립, 즉 지도자와 선수라는 권력관계에서 학생선수들의 상담, 신고, 보호 및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관계당국이나 대한체육회 등 산하기관의 직접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스포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선수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권을 확보해야 한다.

2. 체계적·예방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스포츠 관련법 제·개정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박영아 의원의 '학교체육진흥법(안)'과 안민석 의원의 '학교체육법(안)'을 '학교체육진흥법(안)'으로 통합하여 학생선수의 폭력, 성폭력 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 피해보장의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선수 권리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법(안)의 주무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법으로 보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면 한다.

둘째, 학생선수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스포츠관계법 개별법의 스포츠안전규정 상호 간에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법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의 범위, 안전대책기구, 임무, 안전대책 기본정책 및 계획, 국가기관 등 협조요청, 민간추진운동

떠난 환경에서든 결코 학생선수 앞에서 명백한 성적 표현 혹은 음란 사진이나 자료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③ 과도한 사적 대화 금지 :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에게 직접 혹은 전화상으로 지나친 사적 대화를 피해야 한다. ④ 과도한 사적 편지, 선물 등 금지 : 교사와 코치들은 과도한 사적 편지, 이메일 혹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⑤ 신체나 외모에 대한 언급 금지 :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에게 복장이나 구체적인 신체적인 특성과 같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한다. ⑥ 신체 접촉 최소화 :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⑦ 단둘의 차량 동승 금지 :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를 집에 혼자 혹은 단체일지라도 차를 태워 집에 데려다주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⑧ 학교 밖에서 1 대 1 만남 금지 : 교사와 코치들은 학교 밖(특히, 학생선수의 집)에서 학생선수와 1 대 1 만남을 피해야 한다. ⑨ 단체여행 시 보호자 동행 : 교사와 코치들은 학생선수와 함께 단체여행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와 성인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⑩ 사적인 데이트 절대금지 : 교사와 코치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결코 학생선수와 데이트해서는 안 된다(NFHS 홈페이지 www.nfhs.org).

지원, 장비 등 경비부담, 벌칙 및 과태료,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의 건강과 체력의 강화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스포츠 기본권을 보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온다고 결정된 바 있으므로 굳이 헌법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유로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⁴⁰⁾

3. 스포츠 인권을 위한 ‘스포츠 인권 매뉴얼’ 규정 및 ‘스포츠법’ 교육강화

첫째, 스포츠 안전사고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눈 및 얼음스포츠, 코트스포츠, 야외스포츠, 수상스포츠, 필드스포츠, 격기 및 체조스포츠, 스포츠선수 폭력, 스포츠선수 성폭력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 위험요인 및 원인, 그리고 권리침해 예방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⁴¹⁾

둘째,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학생선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사전 권리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이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체육계열 중·고등학교의 체육수업과 각 체육대학에 필수적으로 ‘스포츠인권’ 또는 ‘스포츠법학’의 교육을 통하여 스포츠 법치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선수와 그 부모들에게 권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지도자, 학교스포츠클럽지도자의 권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교사 등 스포츠 지도자⁴²⁾에게 ‘스포츠법’ 또는 ‘스포츠인 인권’을 반영하여 연수를 한 후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하고, 201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⁴³⁾을 근간으로 하여 대한체육회와 체육

40) 김두현·강구민, 「현대스포츠법학」, 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13쪽.

41) 김두현, “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 스포츠안전재단 「2010 스포츠안전매니저 운영교재」, 2010, 89-96쪽 참조.

42) 주종미는 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네 가지 법적 이슈로 약물, 폭행, 성폭력, 안전관리를 제시하고 있다(주종미, “운동부 지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네 가지 법적 이슈: 약물, 폭행, 성폭력, 안전관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2호, 2007. 5, 267-300쪽).

43) 여기에는 스포츠인권현장, 스포츠분야 폭력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스포츠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학생 운동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과학연구원, 경기연맹단체들도 특화된 학생선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협회 관계자 및 체육행정 종사자, 종목별 등록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연수 또는 교육을 정례화시켜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체육회에서 실시 중인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등을 통해 학생선수 권리보호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학생선수 권리침해 사례 신고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 운동부 담당교사, 지도자 대상의 학생선수 폭력예방 및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스포츠단체, 대학 등 교육관계자뿐만 아니라 체육인 모두가 스포츠관계 규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실천하였을 때 페어플레이를 통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생운동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생선수들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순결, 폭력, 성폭력 등에 관한 직접적인 주제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절실하다.

첫째, 스포츠맨십을 통한 학생선수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먼저 인성교육의 방향은 홍익인간의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홍익인간의 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배우자를 존중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며, 친구를 사랑하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며, 이웃을 보살피고, 세계평화와 환경보전을 추구하며, 종족과 국가와 사회에 충성하는 사랑과 봉사와 희생정신으로써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개인에 더 큰 이익과 더 큰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을 말한다.⁴⁴⁾ 이와 같은 총체적인 대안으로는 학생선수(청소년)용 교육프로그램과 선수지도자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인의 인성교육을 시행한다.

둘째, 학생선수에 대한 신민주주의 교육은 인간의 일탈행위, 불평등한 복지 등 민주주의 제반 문제점을 개혁하여 학생선수의 인간성 회복을 하지는 이념을 의미한다.⁴⁵⁾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2011. 6).

44) 김두현·최선화, “효문화와 자원봉사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8집, 2009 참조.

45) 김두현, 현대자원봉사이론과 실제-신민주주의에로의 자연환경보전과 인간성 회복, 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35-40쪽;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는 학교, 사회 및 부모들이 가정 내 의사결정에 청소년, 선수, 학생 및 자녀를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 방법으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여 모범적인 사례 발굴, 프로그램 및 지침서 발간 및 배포 등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⁴⁶⁾의 스포츠활동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보다 건강한 인성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⁴⁷⁾에 대한 스포츠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⁴⁸⁾

넷째, 우수와 비우수 선수 구분, 운동종목별, 대학 및 실업팀 희망진로 파악 등 학생선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다섯째, 선배 운동선수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선배와 연계한 멘토-멘티 결연 등 멘토링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학습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선수들의 여가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령별 및 체계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IV.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지도자나 학생선수들에게 인권 등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정보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학생선수의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선진

46) 이 활동은 2011년부터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적용된다. 매년 확대해 2013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정규 수업시간에 넣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처럼 성적을 내지는 않지만 활동 기록은 고교, 대학 입시에서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부터 도입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이 커졌다. 향후 고교, 대학 입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활동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47)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7개국 1,516명이 해외봉사를 다녀왔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실시한 국내봉사활동은 총 9,723,106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2009년 12월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1,552,870명이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학생만도 720,198명에 달해 총 2,273,068명에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 전게서, 89-93쪽).

48) 김두현, "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4호(통권 제25호), 2010. 11. 165-169쪽.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켜 스포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학생선수 권리 범주를 정립하여야 하며, 권리 보호정책을 개선시켜야 한다.

① 신체안전권과 건강권 및 보건권으로 학생선수의 안전권 범주 정립, ② 현장 활동 지도자의 청소년 인권관계법규 교육규정 보완, ③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인의 복지 및 인권' 규정 보완, ④ 학생선수의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의 법률화, ⑤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정착, ⑥ 대학체육특기자제도 개선, ⑦ 학생선수 인권침해의 실태조사·상담·치료·중개조정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⑧ 명백한 예방정책의 기본지침 수립, ⑨ 실질적인 지도자와 선수 간 예방교육 이행, ⑩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⑪ 법과 정책에 따른 피해자 지원체계 확립, ⑫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여성선수 지도자 확대, ⑬ 정기적인 학교 운동부 통합 실태조사 등의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스포츠 관련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안전예방을 위한 청소년관계법 및 스포츠관계법 개정, ②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법(안)을 '학교체육진흥법(안)'으로 통합제정 ③ 스포츠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확대된 의미에서 필요하다.

셋째, 스포츠인권 매뉴얼을 규정하고, 스포츠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스포츠권리침해 예방 매뉴얼 개발, ② 학생선수 및 부모들에게 권리교육 의무화, ③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교사 등 스포츠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및 연수 교육시간에 '스포츠법', '스포츠 인권'의 과목 등을 반영, ④ 교육청 주관의 담당교사 및 지도자 대상 의무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① 학생선수(청소년)용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선수지도자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학생선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멘토링 제도 확대 실시, ④ 여가활용 문화 프로그램 및 체계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다섯째, 전문체육은 스포츠외교와 국격을 향상시키는 장점적인 요소가 지대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서는 이를 계속적으로 장려 육성하되 안전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한 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스포츠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의 강화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스포츠 정책을 단순하게 흑백논리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듯이 스포츠 지도자의 폭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처벌(징계,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을 지게 하되 지도자로서의 안정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복지보장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꿈과 스포츠 산업 등 직업선택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전문체육대학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예를 들자면 비인기종목의 운동부를 운영(국립대학의 의무)하여 왔음에도 단일대학으로 국제올림픽에서 약 37%에 이른 금메달성적⁴⁹⁾을 보여 국격을 상승시키는 쾌거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취업증가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 받았다.

끝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실천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 체육계, 교사, 학부모 등 어른들이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49) 역대 하계 올림픽대회(제23회 미국 LA, 제24회 대한민국 서울, 제25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제26회 미국 아틀란타, 제27회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제28회 그리스 아테네, 제29회 중국 베이징)의 성적을 보면, 한국의 메달 수는 금 67개(한체대 30개, 44%), 은 68개(한체대 24개, 35%), 동 62개(한체대 29개, 29%)를 획득했고, 역대 동계 올림픽대회(제18회 나가노, 제19회 솔트레이크, 제20회 토리노, 제21회 밴쿠버)의 성적을 보면, 한국의 메달 수는 금 23개(한체대 7개, 30%), 은 14개(한체대 4개, 28%), 동 8개(한체대 2개, 25%)를 획득했다. 그리고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제9회 뉴델리, 제10회 서울, 제11회 북경, 제12회 히로시마, 제13회 방콕, 제14회 부산, 제15회 도하, 제16회 광저우) 메달획득 현황을 보면, 한국의 메달 수는 금 533개(한체대 167개, 31%), 은 437개(한체대 118개, 27%), 동 560개(한체대 127개, 22%)를 획득했다. 또한 역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제21회 북경대회, 제22회 대구, 제23회 터키, 제24회 방콕, 제25회 베오그라드)의 메달획득 현황을 보면, 한국의 메달 수는 금 21개(한체대 12개, 57%), 은 11개(한체대 5개, 45%), 동 15개(한체대 10개, 67%)이고, 역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제21회 타르비시오, 제22회 인스부르크, 제23회토리노, 제24회 하얼빈, 제25회 예르주름(터키))의 메달획득 현황을 보면, 한국의 메달 수는 금 7개(한체대 4개, 57%), 은 3개(한체대 1개, 33%), 동 5개(한체대 1개, 20%)를 차지했고, 역대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제1회 삿포르, 제4회 강원도, 제5회 아오모리, 제6회 장춘, 제7회 카자흐스탄)의 메달획득 현황을 보면, 한국의 메달 수는 금 44개(한체대 17개, 38%), 은 47개(한체대 10개, 21%), 동 59개(한체대 15개, 25%)를 획득했다.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실효적 지원 대책 제안

- 학교 운동부 구조 혁신의 장기적 관점에서 -

이 병 호
잠신고등학교 교사

1. 문제의 본질

발제자가 서두에 쓴 것처럼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에서 체벌과 구타의 문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그리고 체벌 장면을 목격하더라도 무언가 잘못을 했거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 행위로 이해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적어도 학교 운동부의 훈련장면에서 표면적으로 체벌 장면을 목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아마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수 제기된 학교운동부의 문제점 폭로와 이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각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학생운동선수 인권 문제의 한 축인 학습권 박탈의 문제 또한 수치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예전처럼 대회를 앞두고 수업을 빼먹으면서 훈련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풍토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학습권 보장제'가 점차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적어도 눈에 보이는 학교 운동부의 문제 현상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표면적인 변화에 따라 이제 개선의 방향이 점차 학교 운동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어져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자칫 표면적 개선의 현상들로 문제의 본질이 해소되고 있다는 선부른 낙관론으로 이어진다면 개선의 과정이 담보 내지는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운동부 문제의 본질임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 운동부 문제의 본질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먼저 외적 요인은 구조적 요인으로서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제도에 있다. 즉 경기실적만을 요구하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라는 체육행사의 비교육적 과열경쟁이 학교 운동부의 잘못된 운영 관행을 수십 년간 지속시켜 온 요인이라는 것이다.

내적 요인은 구조적 요인에서 파생된 학교 운동부 내에서의 잘못된 문화이다. 학교 운동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체벌 및 구타, 수업결손 및 학교 활동 경시 등의 문제 등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하였으며, 수차례의 악순환 과정을 거쳐 마치 관행처럼 공고화되어 왔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2.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

발제자는 학생선수 인권문제의 제도적 측면의 원인으로 체육특기자 제도를 지목하고 시기별로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토론자 역시 체육특기자 제도는 학교 운동부가 오늘날과 같은 경기력 향상 또는 운동기능 향상 일변도의 활동으로 치닫게 된 역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현재에 있어서도 운동 이외에 다른 학교활동을 불필요한 요소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체육특기자 제도는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를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며, 적어도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교 운동부의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손질이 필수적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학습권보장제 등의 방안은 학교 운동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적 요인인 체육특기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내부 관계자들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학교 운동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외적 구조의 변화 없는 내부의 변화는 일정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체육특기자 제도에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체육특기자 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대학입시 수시전형의 체육특기자 전형이 내신 성적(또는 수능) 등의 교과 성적 및 비교과활동 자료를 최소 50% 이상 반영할 수 있어야 실효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¹⁾

1) 몇 마디 더 하자면, 사실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들은 초·중·고

3.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의 개선

아울러 토론자는 학생선수 인권문제의 제도적 원인으로서는 현행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의 시·도 간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보다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리에 치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 체전을 앞둔 시기에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많이 발생하며, 이 시기의 훈련강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학교 운동부의 비인격적·반인권적인 체벌 등의 문제 역시 양 체전의 과도한 경쟁드라이브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발제자가 사례로 든 ‘고 김종두(2003년 사망)의 사례’ 역시 전국체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양 체전의 개선 내용의 핵심은 학생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교육적인 운영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적 방식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합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양 체전을 통해서 길러져 왔던 엘리트체육의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을 학생선수의 적성과 재능을 발굴, 발현시키는 교육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는 운동만 하는 폐쇄적 이미지의 학교 운동부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서 전국체전에서 고등부를 분리시켜 중등부와 함께 ‘학생 스포츠제전’으로 교육적으로 운영한다.²⁾ 초등부는 시·도 내로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포츠에 적성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회 개선 방안으로서 가령 디비전 시스템으로 현행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병행 개최되어야 한다. 이미 현재 학교별 운영 중인 구기대회 등의 대내경기를 활성화하여 대교경기로 연계시키고, 지구별, 지역교육청별, 시·도교육청별 대교경기로 확대하고 있는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스포츠제전’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여기에 현재 등록 선수에게 한정된 출전자격은 학교 운동부 가입에 부담을 갖는 학생의 경우 어려움이

운동부 시절 수업을 등한시켰듯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강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대학 체육부에서는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점을 관리해 주는 것이 대학 엘리트체육의 현실인 것이다. 이른바 국민적인 스포츠 영웅들을 데려가려는 대학의 스카우트에 대한 후문은 프로스포츠팀의 그것과 흡사하게 보이기도 한다. 대학 4년 동안 강의 받은 날짜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인데 학사 자격증을 받는 것을 보면 이해가 힘들다. 대학 교수직을 약속하면서 학생을 스카우트하는 대학들의 상황은 대학이 도대체 학문을 연구하는 교육기관인지 의구심을 들도록 한다. 이렇게 유명한 스포츠선수로부터 일반적인 학생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대학의 특기자 제도를 통한 관행(?)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학교 운동부의 자구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현재 일반부와 함께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고등부 학생선수들은 성인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대회방식에 의해 비교육적 현장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아직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야 하고, 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 성인대회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있으므로, 학교 스포츠클럽에서 활동 중인 학생, 나아가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예선대회에 참가하여 참가자격을 얻은 모든 학생에게 참여의 기회를 기량 수준에 따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대회를 대비하여 수업을 빠지거나, 학업을 경시하여 물의를 빚은 학교 운동부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³⁾

4. 학교 운동부의 구조 혁신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엘리트체육의 육성이 본격화되고, 1972년 체육특기자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학교 운동부의 모습은 학교의 과외활동으로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도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즉 현재의 학교 스포츠클럽 정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이니만큼 학생들의 자율적인 과외활동으로서의 그것으로 보긴 어렵다. 토론자가 보는 학교 운동부의 청사진은 학교 운동부 학생이나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이나 모든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과외활동에 참여하고 즐기고, 이 활동의 과정에서 재능 있는 학생선수가 배출되는 통합된 활동의 장으로서의 학교 운동부이다.

혹자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이상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많은 선진국에서도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소수정예의 엘리트체육 육성시스템을 아주 어린단계에서부터, 그것도 학교교육의 과정 속에서 육성하고 있지는 않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소수정예의 시스템이 학교 안에 공고하게 자리하게 된 우리나라의 운동부 역사이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해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 변화의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본다.

첫째, 학교에서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종목을 구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축구와 같은 종목의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서 주도하기보다 외부 클럽과 더불어, 그야말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모임으로서의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종목의 경우 충분한 예산과 프로그램 지원으로 특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⁴⁾

3) 초등학교 축구 스포츠클럽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을 이룬다면 축구와 같은 스포츠는 기존의 학교 운동부를 통해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구 유소년클럽 내에 일반반과 선수반을 분리하여 육성하는 방식은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을 연계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판단된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의 중장기적 통합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계획하여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교 운동부가 학교 스포츠클럽처럼 개방적 운영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발제자가 지적한 학교 운동부의 왜곡된 문화로서의 ‘병커 멘탈리티’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현재 학교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 참여의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학생의 체육활동과 체육인재의 발굴 양성의 과정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그런 점에서 현재 교과부에서 운영 중인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은 축구, 농구와 같은 종목보다 특화된 프로그램과 예산이 요구되는 종목에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이러한 학교 운동부의 구조 개선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선수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

이 소 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1. 학생운동선수의 보호되지 않는 인권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차별 금지 등 학생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학생운동선수의 경우에는 학생의 권리는 상실된 채 운동선수로서의 역할만 요구되는 것 같아 아쉬움과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학교스포츠의 주성격인 순수 아마추어리즘의 지향이 아닌 엘리트 체육, 지나친 승부욕, 운동만이 살길이라는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 등으로 학생의 본분인 학업을 등한시하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묵인하며 어린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

모든 이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사안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의 예방 및 근절뿐만 아니라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는 중도탈락 선수에 대한 이해와 그 대안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학생운동선수의 인권 지키기

☐ 운동선수로서 체벌정 도는 견뎌야 한다는 학생, 학부모의 인식 전환

몇 년 전 지도자와 선배가 어린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해 왔다는 충격적인 보도로 우리 사회는 체육계의 만연된 폭력 문화를 비판하며 각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 고충처리센터’를 신설하였다. 학생선수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수 개개인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주기 위함인 것이었다. 하지만 위원회와 고충처리센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이 드물 뿐더러 이러한 제도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도 그 수가 매우 적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몇 년 전에 비해 체육계에 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긴 하지만, 뿌리 깊은 폭력 관행을 철저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의 활용과 적극적인 홍보 및 법적 보호와 지속적인 감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폭력 근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학생, 학부모의 ‘이 정도 체벌은 인격 침해가 아니며, 운동선수로서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지도자가 함께 인권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 학생운동선수의 학습 지원을 위한 학업 멘토링 제도 도입

요즘 운동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 대다수는 공부와 운동의 병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시합 때를 제외한 날엔 주로 방과 후에 연습을 한다. 그래서 예전처럼 연습시간 때문에 수업 결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과도한 연습량으로 공부를 할 시간을 빼앗기는 일도 드물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운동과 학습을 함께 하도록 지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뒤늦게 학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습습관 부재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운동과 학습의 병행을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마다 학생선수들의 시합에 따른 수업 결손이나 학업 부진을 도와줄 수 있는 학업 멘토를 두어 학생들이 운동과 공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초·중·고 최저 학력기준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가 아닌 저학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학생선수들의 학습습관을 마련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게끔 할 것이다.

그러나 최저학력기준에 명시된 성적이 너무 낮아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 기말고사의 학년 전체 평균의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이상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이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책임질 초·중·고 학생선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향상된 체격조건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치게 될 것이다. 해외리그에 진출하여 현지 적응을 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언어만 보더라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학교스포츠계에도 학업을 중요시 하는 문화가 하루 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 중도탈락 선수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

우리나라에서 학생선수는 운동을 하고자 마음먹는 순간부터 ‘운동만이 살길’, ‘운동이 업’이 된다.

관심과 흥미로 시작한 운동이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 진로와 연결되는 순간 고통스러운 훈련, 경기 성적에 대한 과도한 중압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잦은 부상, 뒤쳐지는 학업 성적, 폭언과 폭력, 제한된 사회적 경험 등으로 즐거움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중도탈락 학생선수도 다수 발생한다.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의 양자택일적 구조 속에서 운동에만 전념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 그 상실감과 혼란이 매우 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수라는 위치는 사라지고 학생이라는 자리만 남았을 때 학업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고, 형성되지 않은 학습 습관, 학교 사회에서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 진로에 대한 방황으로 학생선수들은 또 한 번 좌절하게 된다.

지금 현재 교육계나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탈락 학생운동 선수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도와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도탈락 학생 선수의 전적인 이해와 개선을 책임질 방안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 또한 보호 받아야 할 학생운동선수의 인권이다.

3. 학생운동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감

최근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으며 우울한 사회 현상 속에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때로는 온 국민이 마음을 합쳐 열띤 응원도 하고

즐거움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곤 한다. 또 국제무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밝은 면만 보려 하고 어두운 뒷면은 보지도 않고 애써 알려 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사회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지금의 꿈나무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한다. 가끔 마스크에 뜰 때만 관심 갖는 척하다가 외면하지 말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애정이 필요하다.

‘학생운동선수’는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운동선수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 일선에서는 형식적인 균형 유지가 대부분이다. 운동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서 운동선수로서의 기량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계와 스포츠계가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제안

장 윤 창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오직 스포츠밖에 없다. 또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에게 통쾌한 승전보를 전해주어 우리에게 큰 감동을 때때로 안겨주고 있다. 우리 체육은 이렇듯 희망과 감동을 주는데 체육정책을 책임지는 분들은 한국체육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방송에서 학교체육의 수업시간이 이제는 선택으로 돌리지며, 더욱이 체육수업의 시간이 줄어들어 가고 있어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성장기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수없이 이야기 하여 왔지만 어린 청소년들은 오직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움직임의 시간이 줄어들어 건강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생활에서 오직 경제적인 발달만 추구하여 온 인간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의학과 음식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성장은 또 다른 한쪽으로는 불행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희귀병들이 창궐되고 있다. 우리 몸이 스스로의 면역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력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의학적 연구에서 발표되고 있다.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권고하는 운동을 하라는 말이 첫 번째 처방전이 된 지 오래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들에게 한 번쯤은 들었을 것이다. 현재 미국 내 대학에서 이용하는 초등학교 체육지도법을 보면 교육체조, 교육무용, 교육게임 등으로 한다. 또한 수업 분위기는 비경쟁적이고 성취감을 만드는 분위기다. 체육교육의 주체는 신체를 통한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에머슨은 훌륭하고 뛰어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듯 체육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체력 배양을

등한시하고 있다. 어른들의 사고가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연구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다. 언제까지나 아이들을 닦할 수는 없다. 가르치는 학생들을 운동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이고 과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스포츠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필자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현상으로 비쳐진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인권문제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온 스포츠가 하나의 희생이 되었던 건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모두가 변화되고 우리 하나 하나가 소중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생선수들은 많은 희생을 강요받고 당하여 왔다. 이 토론에서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문제가 스포츠 현장 한 곳에 국한되어 오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찾아야 한다. 스포츠 현장의 처해진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1.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만 하는 것

비효율적인 지도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나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선수생활을 해 오면서 수많은 지도자를 겪어봤고 운동선수들의 지도자들의 지도유형을 실천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수많은 지도자들은 성격과 지도 방식이 제각각이지만 운동을 시키는 훈련시간의 양과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인격적 모독은 거의 유사한 점이 같았다는 것이다. 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코치나 감독, 즉 운동 지도자들이 오전, 오후, 야간, 심지어는 방학 때 새벽에도 운동을 시켰다.

운동선수로서 대학 4학년과 실업무대에서 선수로서 생활해 오면서 정신 없이 운동에만 집중했기에 공부와 수업은 해 볼 수가 없었고, 지도자들이 공부와 수업은 시키지도 않았다. 나의 경험으로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오직 지도자의 명령에만 따라 움직이는 운동기계였던 것 같다. 오직 운동이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배우지 못하고 왔다. 그렇기에 운동시간만 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지루하고 힘들었던 시간이고, 오직 반복적인 운동의 기술습득 연습만 하였던 것이다.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솔직히 공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오전운동

약 2시간이 끝나고 샤워를 하고 나면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나면 오전운동이 힘들어서 낮잠을 1시간 정도 자고 나면 바로 오후운동을 시작한다. 오후운동은 하루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전술 훈련을 해서 3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오후운동을 마치고 나면 또 샤워를 하고 바로 저녁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의 휴식을 가지고 나면 바로 야간운동을 시작하였다. 야간운동을 끝마치고 나면 하루의 운동이 고달프고 지쳐 잠을 자기 바빴다.

이러한 과정이 일 년 내내 반복적으로 있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운동시간을 피하고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요령을 찾아내고자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와 보이지 않는 머리싸움을 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미리 파악하고 운동을 시켰던 것 같다.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루하며 순간, 순간을 모면하는 타성에 젖어버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미국에 가서 공부 하면서 학생시절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하루 종일 운동하는 시간만 존재했기에 운동이 아닌 다른 분야도 접해 보고 영어와 국어 등의 타 수업을 해 보았더라면 운동을 관두고 나서 또 다른 나의 생활을 해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 한편으론 운동의 효과도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생각하는 스포츠를 할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선수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성적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현실에서 지도자들은 승부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 힘들 수도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수들의 운동방법은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선수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새로운 운동방법과 운동시간의 변화는 운동이 지루하고 힘든 선수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다. 공부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은 선수들에게는 타성이 붙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나오기가 어렵다. 많은 운동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짐으로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동부를 갖고 있는 학교나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일 것 같다.

2. 운동 지도자들의 폭력과 언어폭력

코치나 감독들은 시합에서 승리를 해야만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기에 어떻게 하든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고 그 많은 선수들을 운동기계로 만들 수밖에 없다. 운동 지도자들은 선수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선수들에게 언어와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어 선수들에게는 많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것이 선수들에게는 경기력이든 훈련이든 능률이 올라오지 않는다. 최근에는 폭력을 스포츠계에서 추방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잘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운동 지도자들의 폭력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중도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와 운동을 같이 하였던 동료들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어느 때는 폭력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운동시작부터 폭력에 길들여져 왔기에 선수들은 맞지 않으려고 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이기에 운동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마추어 팀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현역시절 겪었던 운동방식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점이다.

미국 선수들은 스스로 하는 운동수행이라 한국에서의 운동하는 스타일은 너무나 다르다. 미국에서 몇 년을 생활하면서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놀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를 즐기고 또한 연습을 한다.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원 봉사자들이 가르쳐주고 다정다감한 부모님과 같다.

미국에서의 폭력은 상상할 수도 없고, 폭력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스포츠 현장 상황은 미국과는 정반대이다. 한국에서는 선수를 만드는 집단적인 훈련방식이다 보니 어린 선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도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에는 대한체육회와 각계에서 스포츠계의 폭력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도 운동 지도자들의 의식 변화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운동을 하는 현장에서 폭력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운동선수들은 혼나지 않으려고 운동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 가려 하는 행위를 할 뿐이므로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 두 가지 외에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요즈음 문제되는 합숙의 장·단점을 말하고

싶다. 단체종목의 경우 합숙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간 이어지는 합숙에서 자신의 능동적인 사고와 개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문화를 접해 볼 수 없어 오직 운동기술자가 되어 정서적으로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운동 이외의 사고와 제2의 인생을 채워갈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첫째, 지도자의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가 선수들을 지도할 때 일률적인 지도방법을 행할 때가 많다. 지도를 결정할 때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지도의 실체가 없어진다. 지도를 하기 전에 지도자의 목표가 없다면 선수와 지도자 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매 시간마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지도자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지도방법도 분명 달라지게 된다. 주먹구구식의 방법은 안하게 되는 것이다. 지도자의 목표 설정이 없다 보니 지도자와 선수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신뢰감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꿈을 가진 선수와 꿈이 없는 선수를 파악하라.

꿈을 갖고 있는 선수와 꿈이 없는 선수를 잘 파악해야 한다. 선수 개개인의 성격과 몸의 상태, 신체 구조 등을 잘 파악하고 관찰하여 맞춤형 지도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꿈이 있는 선수는 훈련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일 것이고 꿈이 없는 선수는 그와 반대일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듯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셋째, 꿈을 가진 선수를 따라가도록 한다.

본인이 깨닫지 못할 때는 꿈을 가진 동료들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꿈을 가진 선수를 따라가다 보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 한다.

넷째, 처음과 현재의 마음이 똑같아야 한다.

지도자가 되면 처음에 간직했던 마음이 달라진다. 지도하는 데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가 있게 되고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처음의 마음이 변고 지도 방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선수와의 갈등이 생기고 주변과의 갈등이 생기다 보면 지도자의 수명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다섯째, 타인을 의식하지 마라.

선수와 지도자 간의 신뢰관계와 지도자와 학교 간의 관계가 결국은 지도자가 상급자를 의식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선수와의 유대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도 방식은 선수들에게는 큰 상처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도자가 바뀌면 학생선수들이 상처받는 일도 없으며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학생선수들의 인권도 자연스럽게 보호받게 된다. 학생선수들의 인권문제는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처우가 보장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학생선수들의 인권도 나아지는 것이기에 스포츠와 팀을 갖고 있는 학교나 행정기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벙커 멘탈리티와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전 성 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학생운동선수의 권리를 논하는 데는, 그들이 소속된 사회(Community)의 각 구성원 및 집단의 문화 변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논자는 「벙커 멘탈리티의 변화」와 「청소년이라는 동일한 기준에서의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이에 따라, 논자는 문화 간 감수성 발달이론, 청소년의 문화권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 등을 기초로, 학생운동선수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학문 간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논의를 보완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생운동선수는 청소년 혹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으로서 청소년 활동(Youth work)의 대상이 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신체적·인지적 발달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와의 능동적·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해 낙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국제적 선언과 권고,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 및 인간 안보 개념의 대두와 관련된다. 이 중 대표적인 선언은 “위대한 과학적, 기술적, 문화적 성취의 시대에 청소년의 에너지, 열정 및 창조력이 모든 국민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진보를 위해 바쳐져야 함을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1965. 12. 7. 20차 유엔총회 채택)이다. 그리고 중요 권고사항으로는 “젊은이들의 요구와 야망에 부응하는 광범위한 문화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사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중략 ... 우정과 국가 간 이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문화협력의 관점에서 휴머니즘의 이상을 향상시키거나 널리 인정되는 교육, 도덕적 원칙의 존중”을 강조하는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1976. 11. 30. 19차 유네스코총회 채택)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기초한 친사회적(Prosocial) 패러다임에서, 청소년을 지역사회발전의 잠재적 동반자이자 기여자로 인정하는 통합적(Integrative) 패러다임으로의 청소년활동 패러다임의 전환과, 경제적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환경 안보, 개인적 안보, 지역사회 안보, 정치적 안보로 구성되는 인간 안보 개념(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는 21세기의 주요 교육원리로서 「알기 위한 교육」, 「행동하기 위한 교육」, 「존재하기 위한 교육」, 「함께 살기 위한 교육」 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함께 살기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름」에 대한 감수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감수성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세계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사고범주”인 구성개념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위한 지원」은 문화 간 상호작용의 급증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문화 간 상호작용에 대한 참여 환경의 개선과 기회의 향수에 따른 권리의 보장이 지역사회의 책무성이라는 “권리담론”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병커 멘탈리티」는 M. J. Bennett가 주장하는 「문화 간 감수성발달모델」의 여섯 발달 단계인 거부, 방어, 최소화, 수용, 적응, 통합 중, 두 번째 단계인 방어 단계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다름」에 대해 인지를 하기는 하지만, 그 다른 것들에 대해 두려움이나 혐오심을 가지면서 폄훼(Denigration), 우월감(Superiority), 전도(Reversal) 등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운동선수들에게는 현 단계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상호작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의 보장이 요구된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로 구성되는 문화적 권리는 문화 간 감수성을 구성하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 능력을 증진하고 자유로운 문화 간 상호작용 기회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훈련은 인간에게 타인 및 타민족과 교류함에 있어 최고 수준의 존엄성을 발전시키고 달성하게 하며, 자신을 독창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게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이러한 권리보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첫째, 개인이 문화적 생산과정에 어떻게 참여할지 또는 거기에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지를 선택할 권리와 둘째, 과학 및 예술분야에서 문화생산물에 대한 향수 보장과 관련된 권리 등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된 권리조항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빈 선언 및 행동계획 제1부 19단락 등이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를 제한 없이 나누어 줄 권리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보의 자유가 없으면 사회는 그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민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잘 설명되어 있다.

다양한 대상과의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은 참여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청소년의 참여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회로서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독립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의미도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성으로 강조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권리영역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발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전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 제1조, 빈 선언 및 행동계획 제1부 10단락에 잘 나타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지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 제1조」는 “발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서, 이 권리에 의해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들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온전히 실현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향유할 자격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 선언 및 행동계획 제1부 10단락」에서는 “세계인권회의는 … 보편적이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로서… 발전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한다.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이 밝히듯이, 인간은 발전의 중심주체이다.”라고 인간으로서 청소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운동선수의 권리를 청소년활동과 보편적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논지는 이번 주제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서 첫째, “학생운동선수들에 대한 창조적 다양성과 주도적 참여의 보장이 개인 혹은 단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에 대한 선행연구 혹은 실천적 경험에 의한 증거가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는 관계 당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렇듯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중심주체로서, 그리고 청소년기 고유의 발달과업 수행과, 역량 개발, 그리고 미래의 안녕을 낙관할 수 있도록 학생운동선수들은 그들 고유의 사회(운동생활계)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들과의 사회적·문화적 상호작용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셋째,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력탐색프로그램, 학습 지원 및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링 제도 및 솔리언또래상담 등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체계 운영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학교체육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김 혜 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대한체육회를 통해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방지 및 상담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선수 인권에 대한 매우 좁은 의미에서의 접근에 근거한 것이며, 사실 학교체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쉽게 말해서 최저학력제, 그리고 주말리그제 등은 모두 학생선수 인권의 하나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선수도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다.’라는 인식하에 추진된 것들이나, 이러한 인식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이들이 많다. 다시 말해, “나는 혹은 우리 아이는 학생이기를 스스로 포기했고 선수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권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인가에 대한 인식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된다. 학습권은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학생선수 인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기도 하다. 학생선수 인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선수들이 운동만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학생선수들이 인생에 오로지 운동 한 길만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약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것이다. 운동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특기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훈련을 책임지고 경기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지도자의 존재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력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인생에 있어 다른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선수 육성 체계는 국제적인 수준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길러내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학원스포츠도 소수의 엘리트를 키워내는 데에만 집중해 왔고, 그 과정에서 탈락된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공한 선수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또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였던 체육특기자 제도가 시행되고, 이것이 우리 사회 특유의 강한 교육열과 맞물린 채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일반학생들과는 완전히 괴리된 체육계 학생들만의 이른바 ‘섬’이 만들어졌다. 이 섬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적인 각종 문제들에 대해 섬 밖에서는 무관심했고, 섬 안의 학생들, 학부모들은 섬 안을 지배하는 룰에 최대한 맞추려고만 해왔다.

가장 근본적인 선수 인권 보호는 이러한 오래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정책 목표 전반의 수정이 필요하고, 구조 자체가 거의 40년 이상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시작된 리그제, 학습권 보장제, 정규수업참여 의무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책들 하나 하나는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정도의 수준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학생선수들도 공부를 하고 일반 학생들은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괴리되어 있던 두 트랙이 하나의 트랙이 되고, 넓어진 학생체육의 저변을 바탕으로 운동도, 공부도 함께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또 발군의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나오는 것, 이것이 변화된 패러다임이 그리고 있는 미래 학생 체육의 그림이다.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경기력 향상의 필요성’이 반론으로 제기되는데, 그러한 특수성조차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결과물인 만큼 어렵지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장기적인 체육저변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변화가 꼭 필요하다. 선수 자원의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선수 양성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선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체육특기자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또한 강한 결단이 요구된다. 길고 지난한 길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길을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를 길러내는 데 관계된 모든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지금의 학생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앞으로 학교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점의 최종적인 그림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며, 끊임없는 공론화를 통해 이러한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 방안 관련 토론

정상익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교육연구사

I. 들어가는 말

☐ (시대 흐름) 체육활동 강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 중시는 전 세계적 추세

- 체육활동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예절), 공동체의식(배려)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
 - 신체활동은 뇌 혈류량과 BDNF(신경 성장 유발 물질)를 증가시킴(존 레이티, 하버드대 교수)
 - 규칙적 운동 참여시 연간 2조 8,000억 원 의료비 절감 효과('07.10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 선진 각국(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학교 운동부 문화 정착
 - (호주)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 :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하루 전자매체 사용(컴퓨터 게임 등)은 2시간 이하로 제한
 - (미국) 중·고등학교 성적 4.0 만점의 평균 2.0 이상 획득, 최대 수강 신청 과목 수의 70% 이상 수강시 대회 출전, 경기 출전으로 수업 불참시 특별 과제 수행

☐ (우리나라 현실) 일반 학생들은 운동부족으로 체력이 저하되고, 학생선수들은 운동만 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문제 심화

- 초·중·고 비만율 : 9.4%('02) → 11.6%('06) → 13.2%('09)
- 체력등급('00~'09 비교/중·고) : '00년에 비해 1급이 4.7% 줄고, 5급은 12.4% 늘어남

- 수업이수율 : 69.9%(’08) / 소프트볼(89.6%) > 럭비(79.0%) > ... 축구(54.5%) ... 야구(35.0%) 순(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08년 한태룡 연구원 최저학력제 관련 연구 보고서)

☐ (학교운동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전국대회 입상 부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학부모 부담 가중, 학생선수 (성)폭력 문제 여전히 상존

- 학부모 부담 : 구기종목 중심으로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경비, 용구 구입비, 차량 운영비 등에 1인당 약 50~200만원/월 부담(연간 약 7,523억 원 추정)
⇒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등 법·제도적 정비,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인권교육 강화, 연수 확대 등 인식개선 필요

II. 학교 운동부 선진화 관련 정책(교과부, 문화부)

☞ (관련)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10. 5), 학교 운동부 비리방지 대책 (’10. 7), 2011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11. 1)

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최저학력제 도입 여부 설문조사 결과(’08. 11) : 필요 67.4% > 불필요 17.5%

○ 적용대상, 성적기준, 도입시기

- 적용 대상 : 초 4~고 3(9개 학년)
- 적용 시험 : 학교 시험(1·2학기말고사)
 - * 초·중 :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 고 : 3개 교과(국, 수, 영)
- 최저학력 기준 : 학교 시험(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 : (초) 50%, (중) 40%, (고) 30%

* 단, 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 인정

*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 100%(70점)

- 적용 시기 : '11년도 초 4~6학년 시행('11. 3. 1.~)

* 중·고 : '12년 이후 단계적 시행('17년 고3 적용) / * 현재의 중·고 학생선수는 적용 안 됨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 4~6						
중	시범		중 1	중 2	중 3			
고	시범					고 1	고 2	고 3

○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 제재·구제 방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 단,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기단체 등)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 학력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교육청, 학교, 경기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 맞춤형 학습지도(대학생 멘토링 등),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환경 개선(교육청, 학교)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12개교) 외 '10년도 시험적용학교(48개교)를 시·도교육청 자체 시범학교로 운영
- * 시범학교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체육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 지도자 등 성과 평가에 반영

- 학습권 보장제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방안 강구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10. 3. 1 ~ '13. 2. 28(3년간)
- 시범운영 학교 : 12개교(4개 시·도 × 초·중·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사업 시범운영학교 현황〉

시·도		급별	초		중		고		계
			학교명	종 목	학교명	종 목	학교명	종 목	
1권역	서울	거여초	축 구	보인중	축 구	상문고	축 구	3	
2권역	경기	성호초	축 구	오산중	축 구	오산고	축 구	3	
3권역	충남	성거초	축 구	천안중	축 구	천안제일고	축 구	3	
4권역	부산	명진초	농 구	금명중	농 구	중앙고	농 구	3	
학교수(교)		4		4		4		12	

- 지원내용 : 시범학교에 예산·인력·프로그램 지원

- 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 지원 ④ 각종 스포츠시설 우선 지원
- 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⑤ 초·중·고·대학, 프로팀, 실업팀
- ② 스포츠과학 자문단 운영 지원 등 연계한 진로 지도
- ③ 과학적 훈련프로그램 개발·지원

☐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초·중학교 : 합숙훈련 전면 금지
- 고등학교 :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 ※ 다만, 학생선수의 숙식(宿食)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을 잘 갖추어 운영(이 경우에도 근거리 학생선수들이 기숙을 하면서 합숙훈련하는 형태로 사용 불가)

☐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 종목별 대회일수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일수 3~4회/년 제한
 - 축구의 경우 초·중·고 축구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는 2회/년 이내로 제한('12년 1월부터 적용 / 방학 중 대회도 참여 횟수에 포함됨)

제한 \ 대회일수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12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 태권, 공 수도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 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볼슬레이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 학교축구 주말리그 전환('09~)

○ 추진성과

- 축구리그 참여팀 수가 '08년 대비 113팀(초 90팀, 중 15팀, 고 8팀) 증가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팀 수 현황('08~'10)〉

(팀)

연도	초			중			고			전 체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계
'08	221	0	221	173	0	173	129	0	129	523	0	523
'09	210	56	266	169	6	175	135	0	135	514	56	570
'10	205	78	283	173	19	192	134	0	134	512	97	609
'11	206	105	311	173	15	188	137	0	137	516	120	636
증감 ('10-'08)	△15	105	90	0	15	15	8	0	8	△7	120	113

- 만족도 조사 결과 선수 84.2%, 학부모 78.2%, 지도자 79.3%가 보통 이상 만족 ('10. 11월)
 - 지도자의 만족이유 : 팀 경기력 향상 65. % > 선수 경기력 향상 62.8% > 교우 관계 형성 46.3% > 체력유지 및 부상 감소 40.5% 등

☐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환('11~)

○ 추진배경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결손, 부상위험 등이 있는 현행 평일 중 토너먼트제를 주말리그 방식 전환 필요
- 주말리그 전환을 통해 야구의 발전, 지역주민, 학부모 참여 등 대중적 관심 제고로 야구 저변 확대
 - ※ 학기중 전국규모 야구대회(8개) 통합 → 주말리그제로 전환
 - * 8개 고교야구 전국대회 : 황금사자기(동아), 대통령배(중앙), 청룡기(조선), 봉황대기(한국), 무등기(광주), 대붕기(매일), 화랑대기(부산), 미추홀기(인천시)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강구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능한 종목(빙상, 조정, 골프 등)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으로 학교장 결재 후 운영
- 고등학교(2, 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등 별도반을 편성·운영 가능
 - 학생선수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 확대

☐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 수립·시행

- '기초학력부진아반'에 성적저하 학생선수 참여 확대 등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방안 마련
-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제 등 운영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에 대한 봉사활동시간 인정(봉사활동 확인 : 운동부 지도교사)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대학생 멘토링제 등 순회 학습도우미 운영
- '10년도 문화부(체육인재육성재단)-(주)대교에서 개발한 학생선수 학력증진 프로그램 활용 권장
 - ('10년 성과) 전국 179개교(초 89, 중 71, 고 19개교), 2,469명(초 1,052, 중 1,117, 고 300명) 지원
 - 종목별 현황 : 축구 1,227명(49.7%) > 야구 290명 > 배구 179명 > 태권도 126명 > ...
 - (주요내용) 사전 학습능력진단평가 실시 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제공
 - 주 1회 해당 학교 학습 장소로 방문교사가 방문하여 학습관리
 - (수강비 부담) 학생선수(수익자), (주)대교가 80% : 20% 부담

☐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

-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완화
 - 시·도별 중입·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배정 시 경기실적 반영 비율 축소
- 「선수등록규정」(대한체육회) 사전 고지
 - 선수등록시 학부모, 학생선수에 대해 전·출입시 필요한 학교장동의서 등

선수등록기준 사전 고지로 민원 최소화

- 체육특기자 전·출입시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학교장동의서 발급
 - 개인의 행복추구권 존중 및 학생선수의 진로에 대한 교육적 측면 고려

2.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 운동부 운영 투명화

☐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인권보호

- 「학생선수보호규정」 개정
 - (필요성) 대한체육회의 「선수보호위원회규정」 개정('09. 12월)에 따른 (성)폭력을 행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징계 규정 등 개정 필요
 - (내용)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지역인사 등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및 전문 민간단체와 연계 운영 확대
 - ※ 민간단체 :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성폭력상담소 등
 - (정보 공유) (성)폭력을 행한 지도자 및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에 명단 통보

〈현행, 개정안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성 격	○자문기구	○자문기구
위원장	○시·도교육청 :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 국장 학교 : 교감	○민간위원
위 원	○5~7인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무원 위주	○7~13인(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학부모, 선수 인권보호 및 체육, 법률, 상담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민간 전문가 위주
간 사	○없음	○위원 중 1인(위원장이 지명)
조 사 · 구 제	○선수격리 보호 등	○선수격리 보호,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제반조치 강구
징 계	○일반 폭력과 성폭력 미구분	○일반 폭력과 성폭력 구분

- 학생선수,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
 - 학생선수,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 (성)폭력근절 등 인권교육 실시(교육청)
 -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집합, 사이버, 개별 연수 등) 및 성교육을 이수토록 지도 강화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아카데미(가칭)」 참여 확대
 - '11년도부터 전국 학교 운동부 지도자(5,500여 명) 대상 「학교 운동부 지도자 아카데미(가칭)」 실시(문화부, 체육인재육성재단)
 - 시·도교육청 협조 하 필수 강좌로 운영(3년 단위 의무 수강)

-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지도자(1, 2급) 자격 이수 과정에 인권 및 (성)폭력 관련 교육 신규 추가('11~)
 -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선스, 유형별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등을 자료로 활용
 - 체육과학연구원에서 '09년부터 경기지도자 1급 자격 과정에 인권 관련 교육을 특강 형태로 진행 중임

- 학교 운동부 고객만족도 조사('11. 11)
 - 조사 항목
 - 학생선수 대상 : 훈련프로그램, 학교 운동부 지도자(감독·코치), 시설·환경, 학력 증진 방안, 인권교육,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 등
 -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 : 직무만족도, 고용안정, 처우개선, 시설·환경, 학력 증진 방안, 인권교육,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원 등
 - 활용 방안 : 만족도가 50% 이하일 경우 운동부 운영 컨설팅 등 지원

-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인권교육 내용 반영토록 지도 강화
 -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연 2회, 단위학교)
 - 주 내용 : 인권존중, 성교육, 생명존중, 스포츠맨십, (성)폭력 예방법 등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폭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관리 체계 유지
-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 학교장 간 간담회(연 1회 이상, 단위학교)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추진

○ 추진 배경

-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인성 함양,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주기적인 재교육 추진
 - ※ 학교 운동부 지도자('10. 6월) : 총 5,474명(초 1,865명, 중 2,030명, 고 1,580명) → 자격 보유자(경기지도자, 체육정교사)는 4,276명

○ 주요 내용

①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 직무교육 과정 개설

- 대 상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 자격 보유자
- 인 원 : 총 4,300여 명('11년 : 1,300여 명, '12년 : 1,500여 명, '13년 : 1,500여 명)
- 장 소 : 지역 대학, 연수시설 등(추후 확정)
- 기 간 : 6박 7일(1일 9시간), 60시수 내외
- 주 관 : 체육인재육성재단
- 교육 내용 : (리더십 함양) 코칭철학 및 윤리, 선수인권 및 이해, 상담기법 등, (경기력 증진) 훈련설계, 코칭과학, 능력개발 등
- 교육 방법 : 매 교육과정은 종목별 200명 내외로 추진(200명 내외 × 7회)

②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

- 교육과정 미이수시 학교 운동부 지도자 활동 불가
- 이수 주기는 3년 또는 5년(추후 확정)

☐ 학교 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13. 6. 1.까지 취득(3년 유예)
 - 운동부 지도자 5,475명 중 ①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592명(10.8%),

㉔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079명(56.2%), ㉓+㉔ 3,671명(67.1%)

○ 학교 운동부 지도자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내용)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심의) 신분상 불이익(파면·해임 등) 조치시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부산, 대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코치등급제와 평가제 시행

②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 (학교회계) 운동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가 경비 등 운동부원 학부모 부담 제 경비
 - (학교발전기금회계) 일반 학부모, 동창회, 후원회 등 운동부 지원 기부금과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품 구입을 위한 운동부원 학부모 기부금
 -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조성 방법, 수입, 지출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10. 2~)

③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 (구기종목)의 경우 : 선발기준을 팀 성적(현재)에서 팀 성적과 개인 성적을 합산(개선)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기록경기)의 경우 : 전국대회 상위 성적(현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개선)으로 제시 등 선발기준 구체화
-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개선

- 입상실적(현재) 외 입학사정관계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개선)

④ 학교 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내용)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방법) 운동부 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장기과제)

- (내용) 학부모 경비부담의 일반코치(1,841명)를 전임코치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임코치(3,634명) 인건비 현실화 노력
- (추진방안) 시·도교육청 계획 하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코치 처우 개선 노력

3.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시 하위 법령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안」 (박영아 의원 안/ '11. 3. 14. 발의)	「학교체육법안」 (안민석 의원 안/ '11. 5. 11. 발의)
<p>제10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u>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u>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이수하도록 감독하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최저</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체육진흥법안」 (박영아 의원 안/ '11. 3. 14. 발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체육법안」 (안민석 의원 안/ '11. 5. 11. 발의)</p>
<p>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u>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u>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u>교육과학 기술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u>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④ <u>학교의 장은 부득이하게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u>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u>교육과학기술부령</u>으로 정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 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1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 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체육진흥법안」 (박영아 의원 안/ '11. 3. 14. 발의)</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체육법안」 (안민석 의원 안/ '11. 5. 11. 발의)</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⑤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제15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 기준 및 임용, 급여, 신분,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 및 정책인지 관련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내용

(1) 조사배경

본 조사는 학생운동선수들의 권리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동안 제안되었던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 방안들의 실효성을 검토·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운동선수들의 생활실태, 학교생활, 여가 활동, 인권 교육 경험, 학생선수 보호제도 인지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학생운동선수 권리보호 및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 조사내용

-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운동부 생활
-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
-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여가 활동
-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권교육 인지도 및 피교육 경험(체벌 실태 포함)
-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보호제도 인지 및 활용

2. 조사 설계 및 실사의 진행

조사지역 및 대상	중·고등학교 남/여 운동선수					
조사방법	심층 면담조사(In-depth Interview)					
집단구성 (총 5집단, 9명)	집단	종목	성별	연령	구분	참여자(가명)
	G1	농구부	남	16세	중학교	조정민 김민찬
	G2	태권도부	여	16세	중학교	김민지 강연경
	G3	농구부	남	19세	고등학교	유철준 강현수
	G4	야구부	남	16세	중학교	강승준 양범수
	G5	소프트볼부	여	18세	고등학교	김유라
진행	In-depth Interview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을 Interviewer로 발탁하여 진행함.					

3. 세부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Warming-up	① 면담의 목적소개 ② Interviewer 소개 및 참석자 소개
운동부 생활관련	① 운동부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운동부 생활이 싫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시기는 언제이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운동부 생활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학업 및 학교생활, 여가활동	1. 학업 및 학교생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부 훈련 때문에 수업 진도 따라가기 힘들지 않나요? 수업 진도가 많이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요? • 수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hr/> 2. 여가활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개인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 현재 주어지는 여가 시간에 대해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 여가활동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운동선수 인권관련 인지 및 피교육 경험 (체벌실태 포함)	1. 인권교육 인지도 및 피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 있나요? • 운동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에게, 무엇 때문이었나요? •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 우리나라 운동부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인권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hr/> 2. 학생운동선수 인권 보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도움되었나요? • 스포츠인권익센터, 스포츠커리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나요? •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II. 요약 및 결론

1. 학교생활과 운동부 생활실태

1) 수업참여와 운동시간

- 운동선수들은 대체로 정규수업에 참여함.
 - 중학생 선수들은 정규수업 전교시, 고등학교 선수들은 최소 5교시까지의 수업에 참여함.
 - 수업 불참은 대회기간의 극히 일부와 시합당일 정도에 불과함.
- 학교마다 정해진 수업을 마치면 훈련을 시작하고, 평균적으로 저녁 9시 전후까지 훈련함.
-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교과과정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나, 크게 걱정하지 않음.
 - 운동선수들의 진학에 학업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임.
 - 학습 멘토나 특별보충수업 등의 교내 제도들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기초가 부족하고 공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함.
 - 일반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음.

2) 여가시간 활용

-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일요일은 휴식일임.
- 남자 선수들은 같은 운동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으며, 여자 선수들은 일반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편임.
- 여가시간엔 개인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잠을 자는 등 피곤을 풀어줌.
 - 같은 운동부 친구들과 개인 연습을 하거나 따로 체력 훈련을 하고,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함.
 - 때때로 친구들과 PC 방에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함.
- 생활패턴이 일반 학생들과 다르고,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체로 여가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음.

2. 운동부 내 체벌 실태

구 분	체 벌 실태
감독/ 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르치고 있는 코치에 따라 체벌 정도와 방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현재 체벌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운동 시작한 이후 체벌을 경험한 적 있음. • 최근에는 구타 등의 직접 체벌보다 왕복 달리기 등 체력훈련과 기합을 겸하는 간접 체벌이 실시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수도권 학교들에서는 체벌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 학교들에서는 체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체벌은 경기 성적이 좋지 않거나, 운동부 내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함.
선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후배 간의 체벌도 선배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후배 간의 체벌을 경험했다라도 그런 선배의 수가 적고, 좋은 선배가 더 많다는 의견이 많음. - 자신은 후배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체벌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음. • 이전에 체벌을 경험한 학생들이 선후배 간의 체벌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선후배 간의 체벌을 못하도록 가르치는 경우도 있음. - 선배들에게 체벌을 경험했지만, 스스로 후배들에게 구타나 기합 등의 체벌보다는 대화를 통해 조언하려고 노력함. • 대체로 남자 선수 사이에서 여자 선수보다 선후배 간 체벌이 많은 편임.
체벌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 있는 체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유 없는 체벌도 있다고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감독/코치의 체벌에는 이유가 있다고 느낌. - 감독/코치의 체벌보다 선후배 간의 체벌에서 이유 없는 체벌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 체벌을 당하더라도 크게 대응하지 않고,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벌에 대응하였다가 현재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우려함. - 체벌 발생시 부모님이 나서는 경우, 운동부 내의 위계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부모님께도 잘 알리지 않는 편이며, 알리더라도 부모님의 속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인식이 있음.

3. 학생운동선수 인권교육

1) 인권교육 인지도 및 피교육 경험

-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음.
- 일부 선수들은 학교에서 교내 상담선생님이나, 전문 상담선생님과의 단체 상담 경험과 교내 혹은 각 종목의 협회 등에서 실시한 비정기적인 설문에 응답한 경험은 있음.

2)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인지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스포츠인권익센터에 대한 인지는 거의 전무함.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스포츠인권익센터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
- 인권교육 실시, 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을 알리는 홍보 기능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함.

4. 제언

- 학생운동선수들 학습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 특별 보충 수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충하는 방안 등이 요구됨.
 - 상위학교 진학기준으로 학업성적 비율을 높이거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시합출전권을 주는 방법을 확대하는 등, 보충수업 이외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운동부 감독/코치에 따라 체벌 편차가 매우 다르므로, 운동부를 담당하는 감독, 코치들의 자질 및 인성교육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감독/코치와 학생이 '교육-피교육'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 감독/코치의 체벌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위원(관계자 외 다수 참여) 참여를 보장하고, 사안의 경중에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추가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의 실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학생들이 체벌을 문제 제기했을 경우, 학생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Ⅲ. 주요 조사 내용

1. 학교생활과 운동부 생활 실태

수업 참여와 운동시간

- 평상시 중학교 선수들은 대부분 정규수업을 모두 참여하며, 고등학교 선수들은 5교시 까지 참여함.
- 대회기간에도 정규수업을 진행하며, 시험 당일 정도 불참함.
- 평균 오후 3시 전후로 훈련을 시작하여 저녁 9시 전후까지 훈련함.

수업 참여 정도	G1	G2	G3	G4	G5
	중학교 남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평상시(평균)	전교시 참여	전교시 참여	1~5교시	전교시 참여	1~5교시
대회기간	시험일 불참	시험일 불참	시험일 불참	시험일 불참	보통 4~5교시



녹취 : 운동시간

“3시. 2시 40분에 끝나고 7교시는 3시 40분에 끝나요.” (조정민, 중3, 농구)

“(수업은) 대회 아니면 그냥 들어가요” (유철준, 고3, 농구)

“옛날에는 4교시면 12시 반에 끝났는데 점심 먹고 나와서 애들은 5, 6교시 할 때 저희는 안에서 운동을 하다가 수업이 끝나면 밖에 나와서 운동을 했는데요. 공부를 해야지 한다면서 평균도 나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해서 6교시를 다 하면 3시쯤 끝나요. 나와서 운동장 정리 하고 이러면 4시쯤부터 운동 시작해요.” (강승준, 중3, 야구)

“1교시부터 5교시까지 듣고 운동을 해요...”, “(대회기간이면) 네 그러면 4교시까지 듣고, 밥 먹고.” (김유라, 고2, 소프트볼)

“그때 2시 정도에 끝나서요, 2시 반에 시작해서 5시까지 하고요, 5시에 좀 쉬었다가 7시 반 부터 9시 반까지.” (유철준, 고3, 농구)

“아침에 와서 수업 듣고 집 가면 저는 10시, 9시 돼요. 평소 운동 끝나고 가면.” (김유라, 고2, 소프트볼)

- 운동선수들이 교과과정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학습 멘토나 특별보충수업 등의 교내 제도들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기초가 부족하고 공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함.
- 운동선수들 스스로 일반 학생에게 학업에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음(특별보충수업 등의 확충 및 검토가 요구됨).



녹취 : 수업참여

“(공부)하려고 하다가 잠 오면…” (강현수, 고3, 농구)

“칠판만, 몰라서 쳐다보는, 그러다가 졸고 그런…” (유철준, 고3, 농구)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요 멘토라는 걸 정해주셨어요 각 반 한 명씩 공부를 잘 하는 애한테 수업을 빠질 때도 있으니깐 학습지를 모아서 저희한테 준다든가 공부를 알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크게 도움은 안 되고.)” (강승준, 중3, 야구)

“토요일에는, 오전부터 나와서, 토요일에는 학교 수업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서 보충 수업을 야구부는 따로 모아서 하세요.” (강승준, 중3, 야구)

“국어나 이런 건 듣기만 하면 되는데 수학이나 이런 건 막 그냥 답답하니까 멍 때리고 있고 그래서 자는 애들도 있고.” (강승준, 중3, 야구)

“(공부 멘토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공부에 대한 의사소통이 좀…” (양범수, 중3, 야구)

“운동부 애들마다 다른데요,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제가 못 듣는, 제가 인문계에서 전학을 와서 금융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런 건 어차피 수업도 잘 못 들으니까 내버려두고, 주요과목 국·영·수 위주로 하고 필기 못한 건 친구 거 빌려서 하고 그래요.” (김유라, 고2, 소프트볼)

“일반 학생들은, 저희는 꿈이 운동선수고 일반 학생들은 공부로 가는 거고…” (김민찬, 중3, 농구)

“우리는 운동하는 애들이고 개네는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서로가 다르니까.” (강현수, 고3, 농구)

“(시험치고 그럴 때 반 친구에게 물어보는 상황에 대해) 개네는 대학가야 하니까” (강현수, 고3, 농구)



녹취 : 진학과 성적과의 관계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건 상관없다고...” (김민찬, 중3, 농구)

“1학년 때는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려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좀 하다가 어차피 내가 운동으로 갈 건데 공부 뭐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안 듣다가 그러고 나니까 3학년 때 따라잡으려고 해도 갭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는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김민지, 중3, 태권도)

“(수업진도를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 시험볼 때는 점수가 나오니까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별 다른 건 없어요.” (김유라, 고2, 소프트볼)

“좀...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교에서 뭐 평균을 못 넘으면 시험을 못 뚫다고 하는데, 아는 게 없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강승준, 중3, 야구)

- 운동선수들의 진학에 학업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음.
- 기초가 부족하여, 진학 후에 학교성적이 시험 출전 조건이 되는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의견도 있음.

2. 여가시간 활용

운동부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일요일은 휴식일로 나타남.



녹취 : 여가시간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주말.” (김민찬, 중3, 농구)

“일주일에? 시간을 합쳐서 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김민지, 중3, 태권도)

“일주일에, 일요일은 제가 쉬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지, 중3, 태권도)

“(현재의 여가시간에 대해) 괜찮은 것 같아요” (김민찬, 중3, 농구)

“부족하긴 한데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운동선수는 하니깐” (김민찬, 중3, 농구)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 (유철준, 고3, 농구)

“...오전에는. 오전에는 그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한 6시 정도까지 운동을 하고 토요일은 끝나고 일요일은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운동을 하는 식으로.” (강승준, 중3, 야구)

“여가라기보단 그냥 피로 쌓인 걸 풀어주라고 하루 정도 쉬는 거니까 운동선수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강승준, 중3, 야구)

“아니요, 일요일 날은 항상 쉬고요, 토요일은 대회 있을 때는 하고, 어떨 때 금요일까지만 열심히 하고 애들이 잘 했으면 토요일에는 가끔 휴가 주시고.” (김유라, 고2, 소프트볼)

“일요일 하루 정도는.” (김유라, 고2, 소프트볼)

- PC 방이나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개인 연습을 하거나 쉬며 피곤을 푸는 것으로 보냄.
- 남자 선수들은 여가시간에 대부분 운동부 친구들과 개인 연습을 하거나 어울리며, 여자 선수들은 운동부와도 어울리지만 일반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여가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 생활패턴이 일반 학생들과 다르고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감수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함.



녹취 : 여가 활동

“개인 연습을 하거나(운동부) 친구들과 놀러가고 PC 방 가고...” (조정민, 중3, 농구)

“밥 먹고 쉬고. 피곤하면 자고, 시합이 있는 날도 운동하고 없는 날도 운동하고.” (김민지, 중3, 태권도)

“다 같이 PC 방을 간다든가 아니면 노래방을 간다든가 저희 3학년끼리는 잘 모여서요, 한 번에 모여서 그러고 놀아요. 개인 연습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개네하고 저녁에 영화보고, PC 방... 네, 거의 농구부끼리만.” (감현수, 고3, 농구)

“여가 시간은 거의 운동에 다 쓴다고 하면 될 거 같아요.” (김유라, 고2, 소프트볼)

“저희는 다 따로따로예요. 저희는 학교 친구들과하고 더 친하고 자유 시간이 없어도 운동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김민지, 중3, 태권도)

“일요일에는 교회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엄마 일 도와드리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노는 식으로.” (김유라, 고2, 소프트볼)

“뭔가 애들하고 놀고 추억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로지 운동만 하니까. 옛날에는 운동하기 싫다는 생각도 가끔 했었고 남들은 다 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여름에 더운데도 이걸 막 하고, 운동하기 싫다고도(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좋아 하는 거니까.” (강승준, 중3, 야구)

“일주일에, 일요일은 제가 쉬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지, 중3, 태권도)

- 대체로 여가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음.

IV. 운동부 내 체벌 실태

1. 운동부 내 체벌실태(체벌은 코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1) 감독/코치

- 경기 성적이 좋지 않거나, 운동부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혹은 집중하지 못할 때 주로 체벌이나 기합이 이뤄짐.
- 코치에 따라, 기분에 따라 체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녹취 : 체벌이 이뤄지는 상황

“게임이 졌거나 했을 때, 운동부 분위기가 안 좋고…” (김민찬, 중3, 농구)

“65와 35(맞는 이유 있는 경우 65 vs 이유 없이 맞는 경우 35)” (조정민, 중3, 농구)

“7 대 3(맞는 이유 있는 경우 3 vs 이유 없이 맞는 경우 7)” (김민찬, 중3, 농구)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안 때리고 안 좋을 때는 자기 기분대로 막 때리고.” (김민찬, 중3, 농구)

“그러니까 그날 기분이 좋으면, 만약에 기분 좋으면 안 때리고 기분 안 좋으면 때리고 그런 식이에요.” (김민찬, 중3, 농구)

“정신 못 차릴 때.” (김민지, 중3, 태권도)

“간단하게,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니까 이젠 매가 가는 거죠. 다 잘 했는데 개만 많이 잘못해서 맞으면 괜찮은데요, 부분 부분으로 못하면요, 다 같이.” (유철준, 고3, 농구)

“화는 내시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거니까, 애들끼리 싸웠다가 이런 거는 저희가 엄연히 잘못된 거니까 그만큼 벌을 받는 거죠.” (강승준, 중3, 야구)

- 운동부가 단체 생활이어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 같이 연대 체벌을 받기도 함.
- G1의 학생들은 왕복 달리기 형태의 단체 기합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코치의 기분에 따라 엎드려 뺨치거나 얼굴을 직접 맞기도 함.



녹취 : 체벌 방법 - 중학교, G1

김민찬, 중3, 농구 :

“세트가 있는데 들어오는 걸 봐서 만약에 다섯 바퀴 뛰면요, 1분 몇 초 해가지고 다 들어올 때까지 뛰어요.”

“엎드려 뺨치가 아니라 엎드려 있으면 달려와서 때리는...”

“요즘은 손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저번에 몽둥이로 때리다가 걸러가지고...”

조정민, 중3, 농구 :

“자유투 존 있고, 중간(하프라인)있고, 반대 골대 있잖아요. 왕복으로 째고 여섯 번, 다섯 번, 네 번, 세 번하기도 하고 세 번, 두 번 할 때도 있고.”

“(엎드려뺨치) 그런 거는 많이 해서 괜찮은데 얼굴 같은 데를 기분 나쁘게 엎드려뺨치가 아니라 엎드려 있으면 달려와서 때리는...”

“조금 조금씩 많이 때려요.”

“그 날의 상황에 따라서. 안 맞는 날도 있긴 한데요, 한 명 딱 붙들어, 한 두 명 딱 붙들어, 걸리면 많이 맞아요. 10분 20분에 한번 꼴로 이렇게.”

- G2의 학생들의 이전 코치는 구타도 하고 강압적이었으나, 현재 코치는 정 반대의 스타일로 구타가 줄어들음. 또한, 인근 학교에서는 심한 구타로 견디지 못하고 학생이 자살하여 운동부가 사라진 사례를 알고 있음.



녹취 : 체벌방법 - 중학교, G2

김민지, 중3, 태권도 :

“저희도 하키채로 맞았어요”

“전의 코치님은요, 뭐라고 해야 되지, 포스가 느껴졌어요. 포스가 좀 느껴졌는데 잘 때리시던 분이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많이 덜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코치님은 너무 착하시고, 뭐라고 해야 하지, (사회자(M) : 순하셔?) 아빠 같은 분이세요, 정말로.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시는데, 정말 화날 때는 정말 무서워요.”

“옛날에 2년 전? 다른 중학교에서 운동하는 애가 있었는데 코치님이 너무 심하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코치님이 너무 막 때리고 욕하고 그게 너무 심해서 막 개가, 거기 중학교 지금 태권도부가 없어졌어요.”

“아까 그거. 그거랑요, 그런데 요즘은 때리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막 때리는 거면 반발하고, 예전에는 손으로 막 얼굴도 때리시고 (그랬다던데)”

- G3의 학생들은 예전엔 구타를 경험하고 목격한 적이 있음. 현재의 코치는 왕복 달리기 형태의 단체 기합은 있지만, 구타는 없는 편임.



녹취 : 체벌방법 - 고등학교, G3

유철준, 고3, 농구 :

“저희 선생님은 때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주로 뛰는 거라든지.”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는 있었어요, 차츰차츰 올라가보니까 선생님들도 바뀌고, 중학교 때 맞았어요, 많이. 선배들, 예전에 중학교 때 목 부분을 (감독이 때리는 것을 봤다)”

“벽 잡고 그냥(엎드려 있으면 맞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기합으로 뭘 때) 그냥 시간제한 없이 선생님 기분이 풀릴 때까지.”

“주로 농구부 전체이긴 한데요, 가끔은 3학년 뭐 잘못했으면 3학년만 일으켜 세워서요, 뛰어! 이라고 계속 뛰는 거고.”

- G4의 학생들도 이전 코치들에게 엉덩이 구타 등을 경험함. 현재는 팔굽혀펴기 같은 형태보단 달리기 형태로 단체 기합을 받음.



녹취 : 체벌방법 - 중학교, G4

강승준, 중3, 야구 :

“팔굽혀 펴거나 쪼그려 뛰기 이런 게 애들이 한 번 정도 계속하면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러닝을 많이 뛰어서 애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죠.”

“그냥 엉덩이. 그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먹 갖다 때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학교마다 다르죠. 서울에 있는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죠.”

“대회는 정식 대회니까 없는데 연습 게임 같은 데 가끔 보면 연습 게임 하고 나면 지방 애들은 기합을 좀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양범수, 중3, 야구 :

“강압적인 구타는 없고, 전 코치님께서서는 자기가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못 따라가면 그때는 맞았는데 코치님이 바뀌셔서 지금은(지금 바뀐 코치는) ○○중학교에서 오신 코치님 하고, 프로에 계시다가 온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전 코치한테는 구타가) 네, 조금 없지 않아 있었어요.”

- 수도권 학교들은 체벌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지방 학교들은 체벌이 여전히 유지 되는 것으로 보임.
- G5의 학생은 다른 선수들과 달리 체벌의 직접 경험은 거의 없지만, 다른 운동부의 체벌을 목격함.
- 체벌과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폭력도 가르치는 코치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녹취 : 체벌방법 - 고등학교, G5

김유라, 고2, 소프트볼 :

“(선후배나, 감독님에게 맞는 것)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애들도 여자라서 머리도 기르고 싶어 하고 애들하고 놀러도 가고. 똑같아요, 그냥 운동한다는 것만 다르지.”

“아니요, 그렇게까지 혼난 적 없어요.”

“(여중, 다른 운동부) 선배도 잡고 코치님도 그렇게 잡고 1학년들 건방지다고 그러면서. 못하면 계속 모래주머니 차고 러닝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봤어요.”



녹취 : 언어폭력의 예

“너무 무자비하게 맞거나 심하고 기분 나쁜 말.” (조정민, 중3, 농구)

“그냥 대가리에 든 게 없냐고.” (김민찬, 중3, 농구)

“씨발년아.” (김민지, 중3, 태권도)

“욕이 대단하세요. 전의 코치님께서. 씨발년아, 이리 와봐, 미친년아, 새대가리.” (김민지, 중3, 태권도)

“저는요, 다른 중학교와 운동할 때가 있었는데 코치님이 시키는 걸 안 해가지고 좀 맞고 욕도 듣고 그랬어요.” (김민지, 중3, 태권도)

“저는 시합 때 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욕을 많이 들어서 진짜 기분 나빴어요.” (강연경, 중3, 태권도)

“언어적인 폭력이요? 그건 별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유철준, 고3, 농구)

“초등학교 때부터 욕을 들었으니까요, 그게 언어적 폭력인지...” (강현수, 고3, 농구)

“아뇨, 선생님은 욕은 아예 안 하시고.” (유철준, 고3, 농구)

2) 선후배

- 감독/코치와 마찬가지로 선후배 간의 체벌 상황은 대체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함이며, 선배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자신은 후배에게 체벌을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체벌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음.



녹취 : 선배가 체벌하는 상황

“운동할 때 분위기가 좀 안 살 때.” (강연경, 중3, 태권도)

“되게 막 축 쳐지고 그런 때도 있고 서로 싸우고 이런 때도 있고 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김민지, 중3, 태권도)

“그냥 막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때리고 괜히 꼬투리 잡아서 때리고.” (강승준, 중3, 야구)

“선생님한테 말할까 아니면 맞을래.” (양범수, 중3, 야구)

“이런 식이죠, 일부러 애들이 뛰어나는데 한 명만 계속 봐요. 한 명만 찍어서 개만 계속 보다가 하나 잡으면 그걸 감독님한테 혼날래? 우리한테 혼날래? 이러면 감독님은 당연히 무섭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차라리 형들한테 혼나는 게 낫다, 그러면 형들이 막...” (강승준, 중3, 야구)

“한 명이 잘못해 가지고.” (양범수, 중3, 야구)



녹취 : 앞으로 선후배 간의 구타가 줄어들 것 같은지?

“그걸 모르겠어요. 오히려, 애들마다 매년 들어오는 애들이, 오히려 우린 안 당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막 더 하는 애들도 있고. 들어오는 애들에 따라 다르죠.” (강승준, 중3, 야구)

“(기합 주는) 그런 선배도 있는데 그런 선배는 열 명에 한 두 명이고 거의 다 좋은 선배들이 많으니까. 그런 선배들만 안 만나면. 좋은 선배들도 많으니까. 그 선배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죠.” (강승준, 중3, 야구)

〈선후배 간의 체벌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 G1의 학교는 선후배 간의 체벌을 학생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G2의 학생들은 구타보다는 훈계와 기합을 통해 체벌을 하기도 하지만, 이전 체벌경험들로 자제한다는 의견임.
- G3의 학교는 선후배 간의 기강보다 화합을 우선하여 사이가 좋은 편임.



녹취 : 선후배 간의 체벌 실태

“네, 선배들이 (고학년이 저학년 체벌하는 것) 못하게 해요” (김민찬, 중3, 농구)

“(후배들 기합 주는 상황) 가끔요. 저희는 작년에 선배들이 저희한테 그러는데 저희는 그러는 게 싫어서 착하게 하려고요. 저희는, (남녀 후배들) 다 같이 잡아요. 여자들은 따로 잡기도

하지만. 아뇨, 저희는 절대 안 때려요, 말로만. 기합을 주기도 하고. 한 마디로, 욕으로 말하자면 대가리 박기.” (김민지, 중3, 태권도)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 안 나왔거든요, 그 중학교 때는 선후배 관계가 엄격해서 그냥 다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진짜 제일 좋을 거예요. 선배랑 후배랑 친구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그럴 땐 잡을 땐 또 잡고, 지금 장난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는) 많죠. 저희는 진짜 없는 편이에요. 다른 고등학교는 사소한 거로 막. 가다가 툭 건드렸다고 그걸로도 맞고 막...” (강승준, 중3, 야구)

- G4의 학생들도 역시 이전에 체벌 경험은 다수 있으나, 선후배 간의 체벌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녹취 : 후배 간의 체벌 실태—중학교, G4

“그게 점점 가면서 없어져서,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체벌이나 애들을 기합을 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저희 위의 학년이 되게 심했어요. (작년까지는 선배들의 구타가) 네, 좀 있었죠. 그냥 막 맞는 거는, 그냥 한두 대식 맞는데 기합을 주죠. (맞을 때는) 방망이로. 저희가 그만큼 당했으니까 싫은 걸 아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옛날처럼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해라 아니면 코치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정 안 되면 코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코치님이 더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가끔 보면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런 것도 없어지고 1, 2학년들이 3학년하고 관계를, 장난도 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가끔 보면 그 선배의 선을 지나칠 때가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때는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별로 크게는 못 느껴요. 솔직히 저희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양OO가 그런 걸 많이 반대했죠. 이제 주장이고, 양OO가 1학년 때부터 주장 역할을 해서 많이 혼나다 보니까 자기도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승준, 중3, 야구)

- G5의 학생은 대화를 통해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받고 있음. 타 운동부의 체벌 광경을 목격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직접 체벌의 경험은 없음.



녹취 : 후배 간의 체벌 실태—고등학교, G5

“그런데 별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미팅해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런 걸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말로 하고선 좋게 좋게 하고.”

“(훈계로만) 네. 그렇게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사이가 멀어지지도 않고요. 후배, 선후배 관계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서 고치게 하고 그때 그때”

“(여중, 다른 운동부) 좀 험하더라고요. 진짜 선후배 관계가 딱딱 지켜져 가지고 만약 1학년 들이 잘못하면 일절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잡아놓고 말을 하면 혼내는 거예요.” (김유라, 고2, 소프트볼)

3) 처벌시 대응

- 체벌 발생시, 이유 있는 체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유 없는 체벌이라고 인식함.
-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벌 상황에서 반항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대체로 참고 넘어가는 편이라고 응답함.
- 감독/코치보다는 선배가 체벌할 때, 더 억울하고 이유가 없이 당했다고 느끼는 편임.



녹취 : 체벌 상황의 심정과 대응 태도

“말하면 말대꾸한다고 (맞음)…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운동 끝나면 우리끼리 뭐 어쨌더라 욕하고.”

“몽둥이로 때리는 게 더 아픈데, 거의 이유 없이 때리는 건 없잖아요. 확실하게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고.” (김민찬, 중3, 농구)

“네. 저희가 거기서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 보고 싶었어요. 네. 반항 못 하죠. 많이 나빴죠.” (김민지, 중3, 태권도)

“기분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맞으면 아, 진짜 내가 잘못했다. 선배가 때릴 경우는 짜증나는데 선생님한테 맞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 잘못은 인정하는데 조금.” (강현수, 고3, 농구)

“맞을 때는 돌이켜 보면”, “돌이켜보면 맞을 만했다. (맞고 억울한 경우는) 선배한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계속 봐야 하는 선배들이라 반항 못함) 네. 어느 정도. 버티자.” (양범수, 중3, 야구)

- 체벌을 당해도 부모님에게 잘 알리지 않는 편이며, 알리더라도 부모님의 속만 상하게 할 뿐이라는 인식이 있음. 그 이유로는 부모님이 나서는 경우, 앞으로 관계가 꺾끄러워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임.
- 체벌에 대해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운동부 생활을 할 때, 체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음.



녹취 : 부모님과의 상담 및 반응

“부모님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맞는 건 당연한 거니까.” (조정민, 중3, 농구)

“어머님도 아시는데, 혼자서 그냥 화내시고 코치님한테 말씀 안 하세요. 사이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불편해질 것 같아요.” (김민찬, 중3, 농구)

“같이 이야기해야 하고, 코치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김민찬, 중3, 농구)

“훈났는데도 집에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그런 거… 코치님과의 대면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유철준, 고3, 농구)

“체벌 같은 걸 없애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한참 그럴 때였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해서 감독님한테 말하면 팀 전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한두 번 말해봤는데 이걸 말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걸요, 그걸 또 감독한테 말하면 위계질서라는 게 다 깨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견디자.” (강승준, 중3, 야구)

• 향후 바라는 점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바라는 거 없어요.” (김민지, 중3, 태권도)

“욕하거나 그런 거. 아니 욕은 괜찮은데 옛날을 생각하면… (웃음) 때리는 거 체벌만 없으면 좋겠어요.” (김민지, 중3, 태권도)

“어느 정도는, 일단 체벌이 아예 없어진다면 이건 진짜 완전히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심한 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데를 보면 선배들이 집단적으로 때리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으니
 그런 것만 없어져도. 때리는 것만 없어져도 그런 것만 없어져도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강승준, 중3, 야구)

V. 학생운동선수 인권교육

-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무함.
- 일부 학생들은 교내 상담선생님이나, 전문 상담선생님의 단체 상담 경험이 있음.
 또한, 비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의 설문조사 경험도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은 인권교육이나, 심리상담의 경험도 없는 편임.

피경험 여부	G1	G2	G3	G4	G5
	중학교 남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심리 상담	○○	××	××	××	×
설문 응답	○○	—	○○	—	—

녹취

“학교 심리 상담사, 운동선수 심리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몰아서 상담해요. 그냥 그때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쓰거나 단체상담. 개인적인 건 없고.” (김민찬, 중3, 농구)


“(상담 선생님과 상담) 그런 건 없는데요. 학교에는 그냥 상담 선생님 계신 거 같은데 주로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 가끔 협회인가 어디서 설문지 같은 거.” (강현수, 고3, 농구)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인지 외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스포츠인 권익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
- Interview 대상인 9명의 운동선수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스포츠인 권익센터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호의적임.

인지 여부	G1	G2	G3	G4	G5
	중학교 남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학생선수보호위원회	× ×	× ×	× ×	× ×	×
스포츠인권익센터	× ×	× ×	× ×	× ×	×

 **녹취**

“(스포츠인권익센터) 아니요. 그것도 들어본 적 없어요.” (김유라, 고2, 소프트볼)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지, 중3, 태권도)

“네, 만약에 그런 일 있고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김유라, 고2, 소프트볼)

학생운동선수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제안 현황

I. 학생운동선수 폭력 및 권리 실태조사 현황

1. 선수폭력 실태조사(대한체육회, 2005) : 초·중·고 및 대학 학생선수 1,600명 대상
 - 78.1%가 구타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
 - 학생선수의 58.4%가 주당 1회 이상 구타 경험
2.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6) : 초등학교 학생선수 746명 대상
 - 74.3%가 언어적 폭력을, 74.9%가 신체적 폭력 경험
 -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시합이 없을 때’는 72%가 4시간 이하로 연습, 28%의 응답자는 5시간 이상을 연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합이 있을 때’는 응답자의 70%가 4시간 이하로 연습, 30% 정도가 5시간 이상을 연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학생 605명 중 118명(19.5%)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 여학생 운동부원 133명 중 43명(32.3%)이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
3.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 2008) : 중·고교 학생선수 1,139명 대상
 - 78.8%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폭력으로 인하여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에 여학생이 66.4%, 남학생이 47.1%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63.8%가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해 장소는 주로 합숙소나 기숙사, 특히 친구, 선후배 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대처방법은 폭력 대처 방법에 비해 적극적으로 나타남.
 -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불만을 말하면 선수 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33.2%)’이며 ‘그런 이유로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16.3%)’로 나타나 성폭력에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운동선수로서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시합이 있을 때는 평균 약 2시간, 시합이 없을 때는 4.4시간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82.1%의 학생들이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은 받지 못한다고 응답

4.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0) : 중도탈락 학생선수 560명 조사**

- 운동 전의 성적이 하위수준에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3%인 반면, 학생운동선수로 생활하는 동안 성적이 하위수준이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76%인 것으로 나타남
- 운동을 그만둔 후 하위성적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응답한 학생은 14%밖에 되지 않음.
- 중도탈락 학생선수들은 진학 및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서(33.3%),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30.1%)가 주요 탈락 원인으로 나타남.
- 운동을 그만둘 때 상의한 사람은 부모(49.3%), 감독/코치(10.0%), 친구(9.0%) 순으로 나타났고, 25.8%가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았다고 응답
- 중도탈락 학생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둔 것에 대해 그만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회하는 이유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56%),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30.1%) 등의 현실 적응 문제를 꼽음.

5.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대한체육회, 2010) : 운동선수 1,830명 대상**

- 최근 1년간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2.6%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운동시작 후 최근까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8%로 나타남.
- 운동선수들의 62%가 구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 지도자(210명)와 학부모(110명)의 각각 44.8%, 49.5%가 구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
- 폭력예방교육 경험 여부는 학부모의 28.6%, 지도자의 55.5%, 운동선수 전체의 41.8%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정책 제안현황

☐ 초·중·고 학교축구 리그대회 전환 사업 발표('08. 11)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축구협회 공동 T·F팀 운영('08. 4~7)을 통해 계획 수립

☐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08~)

- 초·중학교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여 전면금지
- 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10. 5)

☐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 운영 중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선' 제작 및 배포
-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운동선수 상담 활성화

- '10년 체육인재육성재단 '스포츠커리어' 개설 등

☐ '10년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

- 지도자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
- 지도자 고용안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평가